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 마을기업 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2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2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3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3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3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3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3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37.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 상정된 안건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 5  
  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 21  
  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다.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 32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 32

---

|  |    |
|--|----|
|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                              | 32 |
|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                              | 33 |
|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                              | 33 |
|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                                 | 33 |
|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                                 | 33 |
|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                                | 33 |
|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 33 |
|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 33 |
|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 33 |
|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                                | 33 |
|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 33 |
|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 33 |
|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 33 |
|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                                | 33 |
|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 46 |
|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                                | 46 |
|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                 | 46 |
|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        | 46 |
| 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        | 46 |
| 2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        | 46 |
| 2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        | 46 |
|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                                | 46 |
|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                                | 46 |
| 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                                | 46 |
|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                                | 46 |
|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                                | 46 |
| 3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                                | 46 |
| 3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                                | 46 |
| 3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 | 46 |
|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 | 46 |
| 3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                              |    |

---

|  |    |
|--|----|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   | 46 |
| 3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 | 46 |
| 37.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            | 46 |

---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간토 대학살 특별법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3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의사진행발언.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도 우리 전체회의나 상임위 할 때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읍소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 공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도권 일극주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은 위기의 상황, 소멸의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게 대도시든지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농촌지역이든 어촌지역이든지 간에 지방의 소멸 위기에 있고 그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우는 다들 자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제2 수도로 불렸던 부산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해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고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찍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된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 16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미 9월 달에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도 그 염원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은 이미 21대에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18개 행정부처의 조율을 사전에 거쳐서 정부와의 쟁점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좀 빨리 입법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과 또 국민의 목소리 또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을 반영시켜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번도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입법공청회, 특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한테 입법공청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관련된 법안의 제정법과 개정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법안 중에서 같이 선별을 하든 전체를 묶든지 동시에 입법공청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번 정기국회,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면 나중에 1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 반드시 입법공청회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간토 대학살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0시07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성주현 1923제노사이드연구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덕진**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은 19대 국회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여야 공동으로,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요. 이번에 22대 국회까지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도, 작년이 이제 100주기였고 올해가 101주기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의 노력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간토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진술요지서에 썼는요. 19대, 21대에도 마찬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해 9월 1일이면 한국에서 늘상 보도되는 게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진행되는 조선인희생자 추도식입니다. 거기에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게 매해 논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들이 사설을 쏟아 냅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제가 조선일보 사설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진술 요지서에. 조선일보조차도 진상규명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처음으로 임시정부에서 조소앙 외무총장이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것 아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작년 12월에 기시다 수상을 만나서 간토학살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언론이 주목 안 하고 그렇지 만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한국의 법 제정을 위한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지워질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진하게 우리들한테 각인되는 역사거든요. 그걸 보여 주는 증좌가 이를테면 일본 시민사회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작년 100주기부터 일본 시민사회에서 더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입헌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 영역에서 애플의 ‘파친코’에서 처음으로 간토 조선인 학살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15일에 ‘1923 간토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되고 일본 의회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회 상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유력지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올해 9월 1일에 일본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갔었는데요. 실내 추도식이었는데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일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오히려 일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들 관심을 가져 주고 NHK에서 방영을 하는데, NHK 방송에서 뉴스를 하면서 영국에서 이슬람 사람들 오인해서 살인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하면서

우리한테도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하는 겁니다. 간토대학살 때 조선인들이 이렇게 희생됐다라는 걸 NHK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라카와 강변에서 봉선화라는 단체를 만들고 40년 동안 진상규명과 추도운동을 하는 니시자키 마사오라는 선생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시민사회나 방송 그리고 정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산케이가 보도를 했는데 산케이도 2025년에는 간토대학살에 대한 여론이 일본과 한국을 막론하고 더욱 관심이 고조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아까 다큐멘터리 상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토대학살의 문제는 이게 조선인에 대한 뿐만 깊은 혐오와 차별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1923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쟁점이 단순히 역사 정의를 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재일한국인들의 지위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자기네들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그냥 파친코나 전에 하던 사람들이나 알지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기하고 진상규명,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상규명 노력은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운동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색출해서 조선인들만 죽인 사건은 유례 없는 제노사이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1963년에 일본에 있는 강덕상 선생이 자료집을 냈고 재일조선인들이 진상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일본 시민사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 1일에도 진행하는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은 일조협회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하는데요. 이것 5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0주기에 제가 그 일조협회 회장님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분이. ‘100년이니까 이제 시작이다, 진상규명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아라카와 강변의 봉선화라는 단체를 추도관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이 추도비를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시자키 마사오라는 분은. 이런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상을 줘야 될 분들입니다.

조금 뒤에 성주현 교수님도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국내 시민운동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입니다. 80년대 이후에야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점점 진상규명 운동들이 진행이 되다가 2023년 100주기를 맞춰서는 시민사회가 전체가 확대가 되면서 한국YMCA전국연맹이라든가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결합이 되면서 전체 시민기구가 만들어졌었지요. 그래 가지고 100주기 추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간토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9월 1일에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일본 시민사회는 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는 2023년 100주기에 그렇게 하다가 좀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일본 시민사회는 한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공회당에 모여서 추도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과 일본 정부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간토 학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안부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더니 지금 제시된 법안의 기구가 너무 비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대하면 줄여서라도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상규명 작업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일 간에 역사 정의에 기인한 건전한, 진짜 진정한 호혜와 평화의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6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희생자들을……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부탁할게요.

○진술인 박덕진 위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주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성주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주현입니다.

저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지고 진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연고자로서 있었지만 유기홍 의원 때부터, 특별법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세 번째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논의한다는 것이 의미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예회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법의 의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과 관련돼 가지고 과연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가, 사실 국내에서는 세 번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일본에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거 조금 읽어 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동대지진 직후부터 이 진상조사와 규명에 대해서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외무부장이었던 조소앙에 의해 가지고 일본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답변을 보게 되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일본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부터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 이제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지만 해외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천도교라든가 기독교 그다음에 청년단체를 중심으

로 해 가지고 재일조선동포학살진상조사회를 원래 조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학살’이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신문에 6661명까지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한인교민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조선인 학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 있었던 독일의 유덕고려학우회라고 있습니다. 유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조선인 학살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점은 오늘날에서 더 중요하게 조금 더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일조선인 학살 40주년을 기해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먼저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일본에서 조금 전에 박덕진 대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선인희생자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오늘날까지 이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조선인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시 조선인이 어떻게 학살됐었는가, 체험담이라든가 구술담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물을 ‘민족의 가시 : 관동대진재와 조선인학살의 기록’, 또 ‘감추어진 역사’ 이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주년에도 보면은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꾸준히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50주년에는 일조협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라든가 단체들이 새롭게 결성돼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조협회가 주로 사이타마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바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는 모임들이 꾸준히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중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유골발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카와강 주변에 있는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두 차례 실시를 했었지만 결국 유골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 신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소식을 알고 이전에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하게 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지바와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꾸준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그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판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바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그다음에 ‘이유없이 살해된 사람들’,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 도쿄에서도 보게 되면 ‘바람아, 봉선화의 노래를 전해주렴 :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부터 70년’이라는 책을 간행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동대지진 80주년에 와서 보게 되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단체가 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학살이 단순히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게 되는, 오히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단체를 결성해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985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 아힘나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국회에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진상, 사진 전시회라든가 또 특별법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20년에 천안시 병천의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 그래서 관동대지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보게 되면 박열기념관이라든가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그다음에 사단법인 독립, 동학선양사업단 이런 시민단체들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끊임없이 추모행사라든가 학술행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에 작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100년과 이후에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해 오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사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본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진상규명에 대한 과제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시민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이런 진상규명 활동을 이제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전향적인 언급을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의 제정을 노력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었고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실 당시 식민지 강점기 상태라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국민에 대한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지금 두 분 다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짧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안부하고 외교부가 일본 영토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일본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을 좀 선행하자 아니면 전문가의 현지조사부터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덕진 먼저 정부 차원에서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풀어 나가는 것

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정부를 더 이상의 도덕적 파탄 상태로 모는 행위는 한국이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소장님께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특별법안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되는 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성주현** 이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당시 희생됐던 분들, 학살됐던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해 왔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박 대표님께, 아까 전의 말씀은 이제 기구도 만들어지고 가급적 일본을 도덕적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일본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삼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진술인 박덕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NHK나 방송,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관심이, 매해 9월 1일이면 이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지울 수가 없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논쟁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 저희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영화는 일본 시민사회에 바치는 현사입니다. 일본 각 지역의 시민사회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추도 운동을 벌이는 것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들을 집대성한 것이 1923 간토대학살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성주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관여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김성희 위원님 지적처럼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대, 21대 국회에서는 행안부도 있지만 외교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벽을 넘어서지 못했는지 그 지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술인 성주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외교의 문제가 조금 더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외교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었던 가해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가해의 역사는 덮어둘수록 사실은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외교 문제로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많이 연구돼 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먼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1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사 중이다,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시민

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자료를 통해서 밝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내 한국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크게 부수적인 문제로 처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방금 진술하실 때 행안부 담당 국장께서 기구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구를 약간 축소하고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뒤의 행안부 국장님.....

○정춘생 위원 행안부 담당 국장님이 답을 좀.....

○소위원장 윤건영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조영진입니다.

아까 박덕진 진술인하고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주로 드린 말씀은 현재 이 사건의 주 무대가 일본이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공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 전환과 외교적 협상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국회에서 촉구하는 이런 계기에 외교부와 행안부가 협력을 해서 좀 더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에 노력을 좀 더 경주하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필요시 위원회를 출범해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법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기구가 구성돼서 이 힘을 바탕으로 일본과 논의를 해야지 일본과 그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냥 묻어 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진술인 위주로 하시고.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양 진술인한테 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주 4·3 그다음에 여순 10·19 법안과의 동일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형태의 위원회보다는—저도 여러 가지 정부 위원회 경험이 있습니다마는—민관 합동으로 어떤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정부하고 정부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들어가고 민간 위촉직 위원들 들어가셔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공동위원장 형태로 해 가지고서 정부의 구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외교적 협상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특별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런 형태가 오히려 희생자나 이런 분들의 시간을 더 끌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 차원의 정부 내의 위원회로서 특별법을 가지고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과 이런 것을 주는 그런 형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덕진 그런 전례가 있나요?

○조승환 위원 그것은 민관 합동위원회에 그런 게 있지요.

○진술인 박덕진 저희들이 사실 19대나 21대에 계속 제출됐던 법안이 골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틀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더……

저는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 대표님.

○진술인 성주현 저도 이 위원회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관 합동하게 되는 것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승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성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셨거든요.

김성희 위원님 하시고 박정현 위원님.

○김성희 위원 행안부 담당 국장님께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저는 금년 5월 초에 왔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로 간토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 보신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저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전에도 없고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정부에서는 일본 측과 협의하게 되면 외교부가 주관이 돼서……

○김성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외교부랑 행안부가 같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그러니까 지금……

○김성희 위원 내년 계획은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국회에서 촉구하시게 되면……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촉구할 문제가 아니라 내년의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외교부랑 행안부가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획을 세워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세울 계획도 없고 해 본 적도 없는 일이 갑자기 오늘 이후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제가 ‘아,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 공청회인데?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저희가 외교부하고는……

○**김성희 위원** 그러면 외교부하고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외교부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김성희 위원** 아니요, 간토학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안부가 외교부에 뭘 요청하셨나고요. 아니,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외교부랑 행안부랑 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법 내기 전에.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행안부에서는 이 간토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법 여쭈어보지 않았고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예.

○**김성희 위원**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외교부랑 같이 푸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가 지금 공청회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가 이렇게 해서 외교부랑 이런저런 일을 해서 간토학살 문제를 다뤄야지라는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는데 외교부가 하면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공청회에서 진술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무슨 외교부랑 뭘 하겠다라는 사실상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단 한 줄도.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일본이랑 무슨 협상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태연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해 주시고.

박정현 위원님, 이 질의는 박정현 위원님까지 하시고 다음……

○**양부남 위원** 저도 한 10초만 하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그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을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만 나오면 끝도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간토대학살 10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상이나 진상조사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중의 그냥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어쨌든 현장은 일본이니까 타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토 내에서의 진상조사 활동의 우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일본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좀 미온적이라 하더라도 이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밝혀 내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 중에서 한 분……

○**소위원장 윤건영** 두 분 중에 한 분……

○**박정현 위원** 예, 한 분만……

○**소위원장 윤건영** 성주현 소장님, 하시지요.

○**진술인 성주현** 예.

현재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상에 대해서 과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할 때도 사실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와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지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단체라든가 개인에 의해 가지고 꾸준히 많은 연구가 진척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이미 연구자들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연구자들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대한다면 보다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문제는 진즉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상해 임시정부 때 정부 차원의 서한이 있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외교적 문제라든지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는 난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죽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제공이나 어떤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만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 실효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박덕진 대표님께서 이번에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 박덕진** 최근에 우키시마호 송전자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그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일본에서 제정이 되면서 일본의 한 변호사분이 나서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 정부가 기본적으로

비협조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역사 부정에 서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일본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키시마 승선자 명단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것 명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한국과 그리고 일본 양심 세력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결국 일본도 문을 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일본을 도덕적 파탄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성주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에 사실, 일본에 변호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일본변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1997년에 재일동포 문무선이라고 하는 분의 인권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조사했습니다.

이 일변협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국가가 조선인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진상을 조사하여 밝힐 것’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본이 국가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일본의 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중앙방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방재협회에서도 조선인 학살과 관련돼서—조선인 학살은 아니지만—당시에 관동대지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이 학살됐다고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꼭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이런 변호사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방재협회에서도 이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것을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에 크게 자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성주현 교수님께, 1923제노사이드연구소가 몇 년쯤 됐지요?

○**진술인 성주현** 현재 한 5년쯤 됐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난 정부부터, 21대 국회부터 죽 이어 오셨는데요. 지금 한국내의 우리 관에 의한 그런 피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일본 정부가 조사 중이다’, ‘문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연구소나 시민모임 독립, 이런 모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또 외교 협력 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지금 시민사회가 나서서 어느 일정 부분 우리 명예 회복이라든가 이 조사의 성과를 조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거나 이럴 때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사회, 시민 이런 단체·연구소 이런 티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서 행안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시민사회하고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그리고 또……

그러면 양 시민사회가 이 성과를 내면 양 정부가 그때 나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교수님께 여

주어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성주현**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강제동원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연구 진행, 진상규명을 해 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국가적으로 지원됐을 때 일본에서 오히려 좀 더 압박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민단체가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처럼 당연히 아마 협상 쪽으로 충분히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술인 박덕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초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한일 외교 문제로 안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그 전 과정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방법들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국내에서는 뭘 했냐는 겁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국내에서는 어떤 작업이 되고 있나, 지금 국내에서는 법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먼저 국내를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게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것 이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으로 한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청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먼저 박덕진 대표님, 성주현 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양부남 위원님 질의 취지와 좀 비슷한데 이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일본 정부는 아주 소극적일 거고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저희들이 다른 관련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방법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성과도 있었고 그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보공개법 통해서 승전자 명단도 나왔고 또 시민사회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증거 플러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면 좀 더 확고한 게 있어서 정부가 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조성할 시민사회 영역 외에 뭐는 더 없는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두 분 중에 한 분 이야기…… 누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박덕진** 그러니까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도 위원** 예, 지금 시민사회에 의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고 제한적이잖아요. 왜?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오롯이 우리 시민사회 영역의 노력으로 다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방법 혹시나 고민하고 계신 것들은 있는지……

○**진술인 박덕진** 만약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일본 시민,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더 많이 발굴이 되고 나올 겁니다, 일단 일본 시민 차원에서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후의 영역이거든요,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으로……

○**진술인 성주현** 저도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진술인 성주현** 저는 어제께 일본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일본 사법성에서 조선인 학살이 23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해 가지고 마킹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마킹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에 의해서 본다면 이미 그 이전에 사법성에서 발행했던, 생산됐던 문서는 확보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정보 공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우선 법안이 19대에 처음 제출됐었나요?

○**진술인 성주현** 예.

○**위성곤 위원** 20대가 아니고 19대?

○**진술인 박덕진** 예, 19대·21대입니다.

○**위성곤 위원** 19대부터 20대, 21대에 다 제출되었고 이번까지 네 번째……

○**진술인 박덕진** 20대는 제출이 안 됐고요.

○**위성곤 위원** 20대는 제출이 안 됐었고요……

행안부 담당 국장님, 관련해서 외교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행안부는 이 일에 대해서 뭘 해 오셨습니까? 혹시 연구 사업을 지원하거나 국책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이리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간토와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예.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관련 연구 예산이.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현재로서는 안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그전 정부나 다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관련되어진 연구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연구 사업에 지원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관련 법령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못 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술인들께서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진술인 성주현** 지금의 연구 성과들은 일본에서는 많이 출판물로 간이 꾸준히 되어오고 있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정부의 전향적 조처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 활동을 들어가더라도 사실 많이 제한적인,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연구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료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들도 우선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했던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행안부 국장님께서 외교적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왜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만 그런 사항들을 계속 고집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붙어서 이견을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작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안부 국장님께서는, 다음번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까지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오늘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은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 과거 전례는 어떻고 제노사이드 이슈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야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9대부터 법률안과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19대에는 법률안 1건, 결의안 2건, 21대에는 결의안 2건, 법률안 1건 그리고 22대에는 법률안 1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꼭 이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성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한 위원님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만 나오면 위축되거나 이런 표현들 비슷하게……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만 놓고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윤건영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법안이 발의됐던 게 19대입니다. 2014년도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의 배경이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이사를 가고 새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 안에 보면 이승만 정부 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각종 여러 자료가 나왔고 그중의 하나가 관동대지진과 관련된 피해를 본 사람들 명부가 나온 거예요. 그게 2013년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추측컨대 2014년도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결의안도 그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법안이나 발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2023년도에 유기홍 의원이 다시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2대 들어와 가지고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를 또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권의 성격과 연관 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윤건영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뒤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묻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오늘 입법공청회에서 토론될 내용은 아니니까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시고 나중에……

○**박정현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짧게……

○**박정현 위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잘 발휘해서 이 법이 잘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이 일본통이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법안 발의자로서 되게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진술인 두 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은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해

서 정말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라도 저희 행안위가 좀 더 제대로 모셔서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1소위가 간토 대학살사건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음 진술인께서 입장하실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 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 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 다.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 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 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11시03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2항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된 여러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훈 지역과소설비즈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박철훈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다음,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최현선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훈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박철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에서 마을기업 지원과 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박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님들께 전해 올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와 봤습니다.

저는 2010년 마을기업의 전신인 자립형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일을 처음 할 때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마을기업을 보아 왔던 것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지역에서 행안부라는 중앙부처와 각 광역지자체가 이렇게 마을기업을 육성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적표는 제법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기업 지원 중에서는 적은 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주주가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또 마을 주민들이 역할을 해서 뭔가 해 본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마을기업의 정의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사실 지금 새로운 기조가 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고향 사랑이라든가 지역애 같은 이런 애정 소비 활성화 관점에서 마을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성적이고 고전적인 이미지보다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소 향토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의 그런 소비가 분명히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또 마을기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이제야,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을기업이라는 이 조직체를 법으로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장 대부분의 목소리입니다.

진술인은 세 번째 챕터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마을기업 기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제안드리는 것이 바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마을기업의 역할입니다. 이상 지역은 경북도 전체 인구 대비 불과 35%의 인구만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마을기업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농산어촌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매출액을 올리는 등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진술인이 또 고민을 한 것은 마을기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현장의 많은 기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간판이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역에 돌아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마을과 주민들과 결합해 가지고 이런 마을기업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간판이 되어 줬다.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

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농어민들에게 마을기업은 중요한 고객이자 또 중요한 판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은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지역에서 자원을 조달할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의 소소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마을기업은 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벼려진 공간 또 각광받지 못하는 공간을 다시 체험과 관광의 명소로 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뭔가 이슈를 갖고 마을에서 기존의 봉사단체나 자선단체 혹은 동호회성의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은 마을기업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던져 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유사 법률과의 차별성은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개별 사안들을 들어 보면 마을기업이 가지는 내용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챕터에서 저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통해서 복합 목적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기업은 시장 원리에서도 장점을 찾고 또 공공 영역과 제3부문의 영역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복합적 가치를 가진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이익회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조직 형태로 마을기업과 유사한 것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마을과 주민들의 관계를 강조하는 마을기업 활성화는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활인구를 현장에서 반갑게 받아 줄 그런 비즈니스 조직체가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마을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한테는 마을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고향 사랑이나 지역애 같은 그런 애정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이익 중심의 경영관에서 탈피한 지역 공헌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진술인의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선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최현선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최현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마을기업 지원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등장에는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또 주민의 자립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배경과 환경에는 지금 지역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것은 지역의 소멸이라는,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통한 지역의 소멸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서 이런 마을기업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기능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보통의 사회적 경제와는 좀 다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전후의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도 그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자체는 미국의 커뮤니티 디벨롭먼트(Community Development)라든가 또 미국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오거니제이션(Community-Based Organization) 같은, CBO 같은 이러한 어떤 전통과 함께 사실 일본에 또 전해지면서 일본의 70~80년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색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이것들이 커뮤니티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적인 모델이 필요한, 이런 모형으로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에서 플레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Place-Based Approach)가 시작되면서 지역 중심의 방향성들이 지역의 활성화에 가장 중심이 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 그것에 따른 일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2010년 이후에 마을기업을 들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또 한국의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저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 703개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되어지는 표 1에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중요한 부분들이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 지역에 골고루 잘 포진되어 있어서 그쪽의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지역의 자산을 높여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애셋 베이스드(Asset-Based), 즉 지역 자산 중심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저희들의 학문에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모델과도 굉장히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 2를 보시게 되면 신규 지정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 2013년에는 385개, 382개의 신규 지정이 있었고 이것들이 한 75% 정도가 계속 운영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 왔는데요. 2023년도, 전년도만 해도 88개밖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지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왜 그러면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적 투입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벌어지는 사업과 또 재정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은 표 3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에 100억에 육박했던 마을기업 사업비가 지금 2025년에는 17억 정도로, 예상되는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정부 예산 중에 100억이라는 돈이 정말 크면 크고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역의 감소 문제의 중요한 자산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정부가 100억의 돈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그 마을기업에 모여서 애쓰고 있는 이

런 모습을, 현실을 볼 때 한 사람의 학자로서 또 국민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을기업법 6개가 발의된 부분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2011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지역의 일자리·소득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2023년 마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는 1800개의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은 1만 2265명이고 매출은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것이 마을기업에 대한 6개 법안을 내 주신 의원님들의 공통된, 또 그 의견들은 아마 지역 지역마다의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내 주신 성과이고 이 성과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예산에 비해서 아까 박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성과였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의 마을기본법을 통해서 지역 중심 순환형 경제 모델로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기업 하나가 아주 소외된 지역에 있을 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잔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 마을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애정과 공동체성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통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초 통계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은 전반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전남, 경기, 충남, 경북으로 표 4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 인구 대비 마을기업의 수라든가 또 시도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전담인력 수 또 시도 중간지원기관의 업무 부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표 8에 나와 있는 기업 매출의 규모입니다. 기업 매출의 규모가 사실은 증가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중요한데 표 8과 표 9의 기초 내용을 볼 때 마을기업 매출 규모는 2023년에 매출 5000만 원 미만 기업이 728개소인데 그것은 전년 대비 847개에서 14% 감소하였습니다. 즉 5000만 원 미만의 기업들이 계속 줄고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곳은 129개소로 전년 대비 17.3%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마을기업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별 마을기업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도 지역에 마을기업이 70% 위치하고 있고 시 지역에는 30%밖에 위치하지 않고 또 수도권 지역에는 20%, 비수도권에 80%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진술드린 것처럼 마을기업은 인구소멸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더 커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이 요즘에 일반식품이 많은데 그것이 저희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지원의 제한들이 있고 이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 공헌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마을기업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아까 박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이익을 구하고 사익을 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마을기업의 법적 정의 및 보호 필요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안정적 재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및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잘 포함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6개 법안 중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또 하나의 법률로 만드셔서 제안해 주신다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제가 법을 냈기 때문에, 제가 경제부지사하면서 경북의 여러 마을기업들하고 함께 사업을 해 오던 차 우리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윤미향 사건 이런 것 겪으면서 굉장히 재정 전체 지원을 다 줄이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미약해서 마을기업이 쓸려 내려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따로 행안부 산하의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경북의 상주 함창읍이라는 곳에서 1927년에 전준한이라는 분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바로 8명 데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가지고 이런 마을기업을 만든 게 시초가 돼서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전준한 상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933년에 보면 일제탄압 시기에 강제 해산될 때까지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들이 이런 마을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해산이 된 거지요. 그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에 가면 시의전서라고 조선 말기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전통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 요리서. 그거 가지고 상주에 있는 어떤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전부리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상주나 경북에 이렇게 오면, 체험 문화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어른들하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김치 담그기도 하고, 홀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비빔밥도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또 출장도 나가고 이런 종류의 회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빈집을 다 정리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경우 마을 어른들이 있어야 그 빈집들 청소도 하고 이 부자리도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행안위에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떼어 나와서 좀 더 예산을 적

극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소상공인 돋거나 중소기업 돋는 그런 어떤 사업보다도 투자 대비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진술인들에게 두 분께 말…… 우리가 내놓은 법을 다 보셨지요? 혹시 보완할, 현장감이 조금 떨어져서 이 법이 통과될 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박철훈** 위원님, 진술인은 의원님들께서 내신 여섯 개 법안을 이렇게 도표로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섯 개 법안 모두 매우 의견이 유사하시다는 지점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진술인이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개발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는 건 조금 아쉽다, 마을기업이 사실 수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익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뭐 그래도 유사한 지점에서 있었던 사회적기업 같은 걸 보면, 사실 마을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개발을 포괄적이고 또 깊이 있게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인구 활성화라는 관점이 한번 추가되면 더 나은 법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올려 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도 위원님 하시고 조승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 마을기업법은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표발의도 어떻게 여당 세 분, 야당 세 분,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의 중심이 최근 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안, 마을기업법 자체가 소멸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쉬웠던 것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70억 원이었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7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25년에는 예산안에 16억 7000만 원까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또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이미 60개가 취소되었고 내년에는 89개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관심과는 지금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자료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결국은 마을기업 지정과 자금지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최현선** 맞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번만 좀 말씀을, 누구,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활약상을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인구 유입 증대나 인구 감소 세 완화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좀 핵심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최현선** 일단은 인구 감소의 속도는 저희가 투자하는 어떤 정책의 투자나 이런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확연하게 띄지 않게 마을기업이 있는데 왜 인구가 주냐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귀농·귀촌하는 인구와 현재 거주하는 인구들의 어떤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완주 같은 경우가 그래도 성공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충북의 괴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귀농·귀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감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차별성 있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현장에서의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분 발표를 듣고요 그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을기업을 연계하는 방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발표 감사합니다.

○진술인 최현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취지에 동감하고 이런 새로운 형식·형태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거는 부탁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도 이런 걸 앵커조직이라는 걸 두고 유입시켜 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지원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농림부대로 또 농어촌에서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문제는 참 성공률이 낮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 형태 같은 경우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마을기업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어촌특화지원센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무한정 계속 정부 지원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 당신 어촌지원센터를 통해서 개발된 상품이 상품화돼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전제로 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 마을기업 부분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좀 구분…… 지금 뭐 저는 제대로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방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마을기업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현선 위원님의 말씀이 더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조 위원님께서 장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어촌에 대한 사업들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좋은 사업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성공하는 확률, 생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게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즈니스성, 즉 기업성의 어떤 결여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투입하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말 관대화 경향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기업 같은 이런 모델들이 어떤 앵커, 어촌에 있는 앵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은 다행히 초창기부터 지역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개의 토끼를 함께 쫓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법안에 꼭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관련하여서 그것들의 유형의 변화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유형의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더 기를 것이냐 아니면 기업성을 더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사실 지금 앵커조직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앵커조직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좀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하려 어느 마을에 들어가겠다, 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초창기 3년 동안은 월 500씩 준다, 초창기 그 이후는 300 준다, 그 이후는 100 준다, 그러면 끝이다, 이런 뭐 좀…… 그런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최현선 만약에 법안에 두었을 경우는 조금 너무 고착화될 경향이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조승환 위원 아니, 시행령 같은 데 두는 것 같은데……

○진술인 최현선 예, 시행령으로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간 지원 체계를 많이 강화시켜 주시면 지금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승환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 두 분께 공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법이, 6개의 법률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아주 분석을 치밀히 하셨다니까 일부 법률안 중에는 마을기업의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의견도 이게 금전적 의무를 지운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의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거 이걸 명문 규정한 법안은 한 건밖에 없던데 보조금을 명문화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진술인 박철훈 지금 법이 아니더라도 지침상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지침 자체도 지금 당해 연도 창출한 이윤에 대해서는 차후 연도 재투자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장에서의 거부감은 매우 적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필요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을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로 규정해서.

○**양부남 위원** 수익의 3분의 2를 재투자한다?

○**진술인 박철훈** 예,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의해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우리 마을기업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갖춘 분야에 한정 짓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창출하는 향후 기대가치가 공익이나 공동체 성에 있다면 지원을 하는 방향도 분명히 보장이 되는 게 좀 더 긍정적 효과가 아니겠나 싶고요.

다만 조건이 기존의 수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성과를 못 내는 것은 그 예산이 가진 경직성에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도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는데 보조금의 사용은 사실 굉장히 경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경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익 중심형 마을기업과 공동체 중심형 마을기업 이렇게 분명히 양분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기업은 굉장히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어떤 마을기업은 공동체 생산을 창출할 것 같은데 그 유형의 성격에 맞춰 갖고 보조금이 좀 더 유연하게 작용된다면 아마 효과성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행안부 노홍석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날 행안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보도자료를 내면서 양적 성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2021년 5월 12일 날 사회관계장관회의 할 때 발표를 했는데 3500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2023년 기준은 1800개예요. 절반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궁금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발표 때 이야기했지만 2021년 예산은 104억 4000만 원인데 2025년 16억 7500으로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걸 봄서는 이 법의 필요성, 법률화를 해서 예산 지원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과 양적 성장을 했다는 근거가 뭔지를 좀 듣고 싶네요.

2021년 5월 12일 날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앞으로 10년까지 해서 마을기업을 3500개로 늘리겠다 했는데 현재 18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월 7일 날 양적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했다는 것인지 그 성장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듣고 싶고, 예산이 지금 6분의 1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법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입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을기업법 지정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지역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도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에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분명히 마을기업 지원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또 그때 저희가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사실은 그때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표현을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1800개 내외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이 지방양여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근거법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원 규모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한 35억 정도가 꾸준히 세워져서 내려갔었는데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갔고요. 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리고 또 3년 차가 마무리되면 인센티브로 꾸준히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예산도 이제 좀 감소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문제를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기업적 조직이지요. 법률안에 보면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들이 있던데요. 그 정의에서 저는 그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중간지원조직을 아까 우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걸 모아 놓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만 중간조직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좀 적은 편이 있지요. 사실은 끊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진술인 최현선** 실제로 지역 중에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회적 경제 부분과 마을기업의 어떤 중간지원조직이 같은 위치에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각 광역이나 지자체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판단은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 조직이 관련 법령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만들면 다 있는데 이게 통합되어지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되어진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법령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지원하는 조직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이 넘었어요. 넘으니까 이거를 전체 입찰에 확대를 하고 지자체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전국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이 서비스 사업을. 그래서 그 업체가 사업은 개발해 놨는데 육지업체가 입찰을,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업체는 그 업체 하도급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들은 좀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무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철훈 예, 공감합니다. 사실 시장원리만으로만 조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향토 소비로 국한 지을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비를 촉진해 놓으면 오히려 앞으로 그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긍정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서비스를 개발하게끔,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끔 정부가 지원하고 그 생산되어진 서비스를 구매해 주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지역에 감귤과즙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도 초기의 성장은 사실은 그런 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결국 지역민이 기업을 하고 지역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 내에서는 기업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마을기업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을에 기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초기에. 시장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모험투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지요, 지역사회 구조는, 읍면 단위의 구조들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도 시 단위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읍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는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읍면에 존재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도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율도 높고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박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법은 반드시 꼭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1소위가 마을기업 관련 제정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이 정돈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11시45분)

○**소위원장 윤건영** 계속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곧바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추서 공무원 예우 강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5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 내용이 같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모두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 시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추서로 특별승진 되더라도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별 적용

대상 공무원에 차이가 있고 모두 소급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쪽 하단 부분을 보십시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요건 등 내용이 각각 동일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는 연금법상 급여와 병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족이 실제로 선택하는 급여가 대부분 재해보상법상 급여이지만 퇴직수당의 경우는 재해보상법상 급여와 병급이 가능하고 유족별 상황에 따라서 연금법상 급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동일 취지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각 개정안별 적용 범위를 보시면 각 안별로,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김상숙 의원안은 적용이 배제돼 있고 나머지 의원안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다섯 안 모두 적용이 되지만 그 사유가 김상숙 의원안과 강선영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반면 유용원 의원안과 박대출 의원안은 그 외에 승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에 교육공무원에 보시면 권향엽 의원안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의원안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쪽을 보시면 경호처 공무원의 경우도 김상숙 의원안은 배제되어 있고 권향엽 의원안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의원안의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전부 다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특히 외무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특별승진에 준하는 특별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목상 승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형평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특별승진 사유의 범위입니다. 유용원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 순직이나 전사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특별승진하는 경우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직이나 전사를 사유로 하는 추서에 의한 승진에 한정되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공무 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을 사후에 추서하여 승진 등 임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건화하여 법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서승진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들의 공통적인 입법취지와 특별승진 사유의 내용을 감안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외무공무원 특별임용도 포섭하며 입법 방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공히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괄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문안은 같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보면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의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유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16쪽부터 수정의견을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2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해서 추가 재정 소요 현황을 보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7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14쪽을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재정 소요는—15쪽입니다—향후 5년간 매년 약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공무 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을 사후에 추서하여 승진 등 임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되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부터 적용코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법률안이 나왔는데 법률안 중에 공무 수행 중 사망·전사한 분만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공무원과 군인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아닙니다. 군인은 저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법률에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전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저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군인과 선거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체 공무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군인 빼고 전부 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부라고 보시면……

○이달희 위원 외교도 그렇고 다 합친 것……

○위성곤 위원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두 번째로,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 시행일 전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무상 사망해서 추서되신 분들한테까지 이 내용을 적용하되 급여 지급의 과거 건은……

○위성곤 위원 현재 지금 추서돼 있는 분?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추서라는 게 과거 10년 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재소급을 해서 적용하자?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적용해도 당연히 유족이 계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찾아보니까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추서승진하신 분이 3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370명?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위성곤 위원 그래요.

한 가지,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특별승진으로 예우를 갖춰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따르는 재정적 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조승환 위원 아니, 저……

○이달희 위원 저……

○소위원장 윤건영 두 분 중에 이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작년에 우리 문경의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했는데요. 한 계급 올려서 소방교·소방정으로 이렇게 영결식을 도민장으로 치렀는데 그분들이 영결식 할 때만, 유족연금을 안 올려 주면 영결식 할 때만 그때 하루 그냥 명예를 올려 주는 거고 그 전의 직급대로 지금 유족연금이 다 나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돈도 보니까 소급해도 우리 국가 예산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계급을 올려서 장례식을 치러 주면 거기에 합당한 예우가 계속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추서라는 게 사망 후 어떻게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공무상 사망했을 때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 다 가능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저는 추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10년 전에 소방, 또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묘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 얼마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아무리 혁혁한 자기 희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승진 소요가 안 돼 가지고서 추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추서도 말씀하신 특별승진의 일종인데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이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상으로 사망했고 풀러스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기한이 없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조승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순경에서 경사 바로 진급해 가지고 범인 잡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서 안 될 걸요, 아마.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직종별로 법에 추서 요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경찰도 직무수행, 대간첩작전 했다든지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했을 때……

○**조승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법적으로 딱 추서를 못 하게끔 막아 놓는 규정들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없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막아 놓는 기준은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없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조승환 위원** 그러면 추서가 신청에 의한 거라면, 지금 추서 안 받았단 말이지요. 추서 안 받았는데 추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수는 없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현재 통계를 봤을 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신 분 중에 추서가 되신 분이 한 30여 % 정도 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만약 추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것은 지금까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안 받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향후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조승환 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심사를 하면 추서를 인정하더라도 소급해서 인정은 되지만 급여는 향후에 주는 걸로.

○**조승환 위원** 급여는, 연금은 향후에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이게 지금 유족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상의.

○**조승환 위원** 유족연금 외에 또 다른 보상금 같은 것 있잖아요. 위험순직 사망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36개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이라든지 순직 그 것은…… 재해보상법상의 돈은 향후에 계속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추가로 하고, 말씀하신 퇴직수당 같은 게 민간의 퇴직금과 유사하게 저희가 민간 퇴직금의 최대 39%인데 그런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원타임만 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향후에만 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조승환 위원** 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적용은 인정하지만 급여는 향후에 지급하는 걸로, 군인도 똑같이 어제 그렇게……

○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안 준다.

○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그것 같아요. 이 법 자체에 대한 의견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조치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급·지위 등을 올려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뒤따르는 게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 거다라는 입장은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처리할까 하는데요.

○ **조승환 위원** 범위는 저도 위성곤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여기 법상으로 따지면 소방·경찰 그다음에 위험직무종사자라는 개념이 있지요? 위험직무종사자라는 개념이.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위험직무순직 개념이 있습니다.

○ **조승환 위원** 위험직무순직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저도 딱 반대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 **이달희 위원** 반대 의견 없음?

○ **조승환 위원** 없음.

○ **소위원장 윤건영**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 없는 걸로 해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견 없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성곤 위원** 저 위원장님.

○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인사 전에 잠시만.

○ **위성곤 위원**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 **소위원장 윤건영** 인사혁신처까지 안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큰 쟁점이 없어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이것까지 하시고 가면 인사혁신처 분들은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거든요.

○**위성곤 위원** 오후에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빨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기동 차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안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4쪽입니다.

8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지난 9월 24일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위 심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만 개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소위 심사 후에 적잖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일괄해서 보고드린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조치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징계사유 관련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 신설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수정의견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부남 의원님의 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일부 법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 기간을 현행 영구적인 임용 불가에서 김태년 의원안은 30년으로, 정부안은 20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이 지난 소위 이후에 추가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이 15년이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양하나 결격기간의 최장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안처럼 20년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법문의 명확성 제고 및 유사 입법례,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격기간 기산점이 되는 형의 의미를 수정하는 의견을 14쪽에 조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개정사항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제외 관련입니다.

이 건은 위헌 판결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사항은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주체에 징계처분 제청권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징계 대상자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인 경우 제청권자인 소속 장관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없고 처분권자인 대통령만이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정사항은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즉시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개방형 직위 감축에 따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3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정사항은 형사기소 및 조사·수사 등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의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한 직위해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일어구 반복 등을 피하기 위해서 법문 표현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견을 34쪽부터 제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정사항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표기를 ‘만 8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조사·수사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적용례에서는 성범죄자 임용결격 단축 규정이 소급적용 등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 명확성 차원에서 일부 자구 정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검토의견 다 동의합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윤건영**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28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함과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간주 규정을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룬 안건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소위 논의사항을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신 내용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서 지난번 논의를 이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이미 정리가 돼서 지난번 토론한 게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 부분은,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굳이 우대의 방식이 승진과 관련이 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센티브를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 다자녀 양육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승진 요인으로 갔을 때 그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와 실제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 결격기간 축소는 어쨌든 헌법불합치가 나기는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특히 공무원 임용 사유로 영구적으로 퇴출돼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인사상의 우대에 대해서, 사실은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녀를 갖고 있는 자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청년들이 여기에 입실을 하고 청년들이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 통로가 사실은 기회 균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승진이나 전보 정도는 고려되겠지만 채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요. 일단 그 문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성곤 위원** 예, 채용을, 한 자녀 대상 뽑을 건가, 배정하고, 이런 고민이 돼서 그리고 된다면 다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라고 해서, 첫째아를 우선적으로 낳아야 둘째아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채용이 자녀 유무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채용이 자녀 유무 때문에 된다라면 수많은

청년들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다자녀 임용 우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승진 우대 이렇게 다 하면, 지금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아이 낳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노동 환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생이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건 모험 아니면 도박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다 자녀라고 하면 그 기준이 두 자녀 이상입니까, 세 자녀 이상입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춘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힘든 상황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 되지 이 법이 귀결되는 방향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법이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제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용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가구 자녀 특별전형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뽑을 때 그러면 5%, 5명은 다자녀 특별전형을 한다, 그게 공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여파가, 그런 여파를 바라고 채용을 넣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채용 부분은 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사실 승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양 위원님 안건 아니십니까?

○양부남 위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 채용·승진·전보에 있어서 다자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만큼 단편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상이고,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직효적인 효과가 있는 게 승진·전보·채용에서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채용에 있어서는 기회의 균등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모든 공무원들의 채용 조건에 보면 우대 조건을, 또 어떻게 보면 기회 균등을 일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국가에 애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기회를 줘야지요. 아이들을 두 자녀 이상 낳아서 키우고 있다가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 우리가 우대해 줘야 됩니다. 아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애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낳은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부양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점수 몇 점 주는 것에 그렇게 국가가 인색하고 야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특별전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점이……

○양부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이……

○조승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이 안 끝나서,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은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공고할 때 가점 얼마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우리가 시행령에 위임하면 전문적인 부처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궁금한 거.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그러면 출산한 분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한 남편도 주는 겁니까?

○**정춘생 위원** 둘 다……

○**조승환 위원** 둘 다 줘야지요.

○**이달희 위원** 둘 다 줘야지요.

○**위성곤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잠깐만, 그 당시에 재혼한 부부가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종합해서 차장께서 방금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여러 부분이, 여러 생각이 갑자기 막 드네요.

○**이달희 위원** 저 한마디만 더 보태…… 양부남 의원님 안에 100% 동의하면서, 말씀하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만, 차장님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공무원 임용은 말씀 주신 대로 실적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했을 때도 적합한, 능력 있는 인재이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을 뽑고 승진도 미래의 잠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대원칙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출생은 국가적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도 지금은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채용 이런 걸 떠나서 임용 전체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구체적인 채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법에 명시는 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경채에서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경력 인정을 3년에서 퇴직 후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했고 지금도 봤을 때 다자녀 기준 몇 명이 좋겠느냐, 승진도 몇 급까지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8급 승진하는 데까지는 적용하고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사회적인 난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공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전체를, 우리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한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청년들 커뮤니티에 이게 뜨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센티브 정도를 주는 정도로 고민하고 있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채용과 관계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논쟁이……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전형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떻습니까? 이제 우려되시는……

○**양부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채용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자녀 응시자는 채용한다가 아니라 채용·승진·전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니까 인센티브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정할 필요가 없지요. 시행령에 위임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대로 무슨 단절된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무슨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위성곤 위원** 그런 건 충분히……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은 무조건 시험 안 보고 입직을 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정춘생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양부남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냐는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무조건 채용한다로 받아들이면, 그런 법이 없겠지요.

○**이달희 위원** 맞습니다. 동점일 경우 요즘 연장자 우대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차라리 동점일 경우에 자녀수를 우선 채용한다 이런 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26조 조항이 임용의 원칙이거든요. 임용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니까 사실은 매우 엄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녀 대해서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조항이 임용의 원칙이라는 곳에 있고 임용 원칙에 있어서 채용·승진·전보,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게 임용 원칙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원칙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정책 시행사항 부분에 이렇게 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 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법조항이 능력·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도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에 우대할 수 있는, ‘다만’으로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대를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우려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오해되거나 원칙에서 규정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고 그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종의 인센티브이지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걸 처리할지 아니면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남겨서 오후에 다시 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 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 차관님은 오후에 계속 배석하셔서 법안심사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장님 의견을 여쭈어 보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위원장님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곡히 읍소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개정법, 제정법 있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에 법안을 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한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야당 간사님한테 우리 여당 간사님이 이것 입법공청회를 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왜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여당 간사님 다시 만나서 의논하고, 저도 지역의 균형발전·상생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라서 충분히 협의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말만 갖고 지금 이해가 안 되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토론하자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면 따로 좀 얘기를 해 주시든가요.

○**소위원장 윤건영** 어쨌든 정회는 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앞에 다 마무리 발언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2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2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3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3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3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3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3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37.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4시35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19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결격사유가 임원에 한해서 네 가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원에 직원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직원의 결격사유 추가는 두 번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임원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경우에도 방금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당연퇴직사유가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결격사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여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퇴직사유 또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원 임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관마다 결격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결격사유의 누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아래의 입법례와 같이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6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님 안이 임직원의 결격사유로서 직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직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60조 1호는 삭제되어 있는데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었고요. 2호의 미성년자, 3호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3항을 보시면 ‘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해서 직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5항은, 수정의견의 5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해서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의 제1조는 시행일이고요.

제2조에서는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결격사유 신설을 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채용 시에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예전 같으면 무슨 범죄라고 하면 나가서 상해, 강도, 돈 뺏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요즘 온라인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무슨 온라인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사진 배포 등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임원으로만 규정시켰던 것보다는 직원으로 늘려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뽑는 것은 맞다고 봐서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범죄경력조회에서 반영은 세부 지침으로 정하나요? 금고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이 있는데 그 조회 때면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방공무원법에 상세한 내용들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2년이 지나야 된다든지 하는 매우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달희 위원** 거기에 준용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처럼 긍정성도 있지만 이게 전 임직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자체 장이 오히려 이걸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 경우에 어쨌든 공사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들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 조항에 그렇게 보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들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체장이. 그게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온전한가는 한번 곰곰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그러면 소위 자료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방공사 출자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데요. 주체는 지방공사 사장이고 요건은 출자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입니다. 의무 내용은 해당 사실을 자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사 출자법인 관리를 위한 기본 전제인 정보 획득이 용이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행안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상기 국가공공기관 출자기관 경영성과 보고 제도를 지방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지방공기업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추후 행안부 안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보고를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정부 제출 개정안과 함께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의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을 가맹점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은 현행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단서를 신설해서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의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어촌은 상품권 가맹점 숫자·유형 등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이에 행안부도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서 가맹점 20개 미만 면지역 농협 농자재판매소는 가맹점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특례를 두는 대상 사업장(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 사업장) 및 지역(농촌·어촌)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 사업장을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에는 농협·수협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민간사업장과 경합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 등으로 대상사업장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어촌에는 읍·면 외 동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으로 대상사업장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이 부분에 제7조의 현행을 보시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1호, 2호, 3호가 나와 있고요. 이 수정의견은 행안부하고 합의되지 않은 저희 전문위원회의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하위 법령으로 대상지역·사업장의 구체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논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지금 논의하게 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한 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1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12조 원을 굳이 비교를 하면 이마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업종이 농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읍의 가맹점이 저희가 조사하기로 한 943개 정도 상품권 가맹점이 있고요. 읍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가 한 1.7개 정도 있습니다. 만약 읍의 하나로마트에 상품권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943개에 상당한 영향을 아마 미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서도 마찬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요. 면지역인 경우에는 가맹점 수가 한 130개 정도 되고 또 마트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그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입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측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주셨던 사항 중에 대상사업장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장에는 안에 들어다보게 되면 장제사업도 있고 의료 사업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수정의견으로 하면 이 행안부 대상지역·사업장의 구체화를 허용을 한다는 건 그러면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법령으로 허용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게 가맹점 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맹점 수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이하인 면 단위는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되면 다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위 법령으로 해 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도 위원** 저는 수정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이걸 구체화를 통해서, 특히 시골 면 단위 같은 데 있잖아요. 지역상품권 오면 어르신들 어떻게 시내 나갑니까? 그것 나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그 소비를 면 단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작은 면 단위들은 허용을 하는 기준을 구체화를 좀 허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법안의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하나로마트를 풀어 주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개정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사실은 주로 농어민이 가서, 지역주민 거의 대부분이 가서 이용하는 상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보통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인데 읍면 단위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전자제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읍면 지역에. 과거에는 전파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 단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산품을 사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역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는 948개는 주로 식당이나 아니면 옷집이나 이런 유여서 실제 하나로마트와 겹치지 않는 측면이 사실은 매우 강해요. 그래서 저는 신정훈 의원님께서 제기한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도 위원님 말씀 중에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 저희가 면에 조사하기로는 한 10개 정도가, 하나로마트 말고 슈퍼마켓이 한 10개 정도 있고 읍에는 한 33개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맹점들은 아마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제품이나 의류나 이런 건 취급을 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주로 식품에 관련된 생활용품점이라고 보면 되지요, 슈퍼마켓이라는 곳이. 물론 하나로마트도 생활용품을 취급하긴 하지만 그런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 형태로 보면.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 온라인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부분이 읍·면 지역에 해당을 하지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올해만 얼마지요? 2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확한 온누리까지 제가……

○**위성곤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한 2조 정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런 제한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정훈 의원안을,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조문을 만들어서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김성회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저는 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시뮬레이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의 내신 법안이기는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애초의 취지, 지역에서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취지에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아예 열어 주는 것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로마트를 아예 다 열어 버리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린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김성회 위원님 하시고 조승환 위원님.

○**김성회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뭘 써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 다 광주 나가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니 동네에 돈이 안 돈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 다 풀어 주면 딴 동네에서는 또 반대가 많을 텐데 제가 있는 고향만 해도 하나로마트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마트 가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쓰는 마트를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정인데 나주 같은데는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라서 이것도 그냥 질문인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시행령으로 하면 전국 단위로 묶어야 되는 거라서 이걸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

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지금 조례로 위임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한도를 정해서 조례로 가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행안부령으로 본다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행안부령에서 조례로 다시, 여기 ‘조례’가 안 들어가 있지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법률에 의무적으로 위임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대기하는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하고 그렇게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안 하게 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권한을 조금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남겨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박정현 위원** 연동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시겠어요?

○**조승환 위원** 저도 같이, 연동된 의견이랑 비슷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조승환 위원** 저도 보면 이것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은데 분명히, 아까 농기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가서 안 사고 철물점 가서 사려 그러면 시골 같은 데 장사를 안 하고 문 닫혀져 있고 전화 걸어야 나오시고……

○**위성곤 위원**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런 현상들로 봐서는 사실 풀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면하고. 또 한 면으로는 그러면 그 철물점 가게는 다 문 닫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 저는 입법 기술적으로 그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셔요.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가 발행하는 정책분이라고 흔히 말하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가 국비가 지원된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제한들이 걸려 있고 그런 상품권인 경우에는 지금 하나로마트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농업수당 같은 것들은 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으시고요.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그러면 이 제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하나로마트가—저희가 22년도 제한을 하기 전의 통계입니다만—그 당시에 쓴 것을 보면 한 1조 1000억 원 이상이 아마 하나로마트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좀 조정이 되면 그만큼의 상당 부분은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지방정부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국비가 일정 부분이라도 매칭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한편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한편에서는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난민’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뭘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고육지책으로 하나로마트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셀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저도 현장에서 어른들 만나면 워낙 그냥 불쑥불쑥 ‘왜 이 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사업의 취지나 또 그 옆에서, 작은 골목에서 겨우 벼텨 가는 그런 소상공인들, 읍을 지키거나 면을 지켜 내는 그런 소상공인들 생각하면 이것 함부로 결정해서도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 지역에 맡기자 해도 선출직에서 그 지역의 골목골목 전부 상가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다 반대할 거고 또 그냥 방방에 있는 특히 노인이나 연령대 많은 분들은 우리 거기 가서 막 쓰자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이 취지를 보면 한 사오십 % 가까이 됩니까, 사오십 % 이상은 하나로마트로 가서 이 돈은 전부 중앙으로 다 올 거다 생각해요. 원래 지역상품권은 하나로마트에서 쓰면 농협으로 다 이익금이나 이런 게……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이달희 위원 그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위성곤 위원 농협을 보시면 농협중앙……

○이달희 위원 예, 하나로마트.

○위성곤 위원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농협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하나로마트 사업은 대부분이 95% 이상이 지역농협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읍에 있으면 A라는 읍에 있는 농협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그 안에서만 돋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돈을 하나도 입금시키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로마트의 재화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여기에 배분을 해 주는 역할을 중앙회는 하고 있고요.

○이달희 위원 배분을 하면, 구매를 하면 그 구매대금을 중앙으로 다 가지고 가는, 공짜로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소득은 전부 다 이윤이나 모든 소득, 왜냐하면 모든 공산품은 다 어디서인가 구매를 해 와야 되는데요. 지방인 경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장에서 다 구매를 해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마찬가지고. 지역농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그 안에서 소용되어지고 판매되어지고 그게 수익이 만약에 A라는 지역농협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조합원도

다 그 지역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수익이 나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뭘 줄지도 그 동네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랑은 전혀 다른 게 대형마트는 인건비만 A라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업이 이윤을 가져가고 이윤의 처리를 거기서 하고 회계 처리도 거기서 되어지는데 지역농협은 하나의 금고의 역할, 은행의 역할을 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은 좀 충분하게 보셔야 되고.

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 지역, 그러니까 동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그것까지 열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지역 내 동 지역인 경우는 하나로마트를 열지 말고 읍면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읍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건데,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에 과거에는 전파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옷집도 있었는데 거의 많이 문을 닫아서 실제로 하나로마트가 공급할 수 있는 공산품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냐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막아 보자라는 게 입법적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현장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조금 듣고 와서 계속 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보다는.

○한병도 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한병도 위원 차관님, 아까 전에 사용됐던 게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조 2000억인가요, 3000억 말씀하신 그것은 전체를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전체입니다.

○한병도 위원 전체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통계에는 동 단위나 면 단위 이런 것을 구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도 위원 소비 형태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 것 읍면동 단위로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 금액만 말씀드립니다.

○한병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보면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하나로마트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엄청나게 해서 면 단위는 아주 작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면 단위 이런 데는 주민들 수용성을 생각하더라도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아니, 저 하나만요.

가맹점 등록에서 하나로마트를 제한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데 하나로마트는, 농협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러니까……

○위성곤 위원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하나로마트를 못 하게 하시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저희가 22년도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라고 하는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을 30억으로 하면서 이 하나로마트가 제외됐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마트가 아마 기준을 평균입니다만 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고, 법률에는 하나로마트를 다 할 수 있는데 2022년 법률 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30억 이상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위원들이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부대의견만 풀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조례로 지정을 해서 일부 풀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경우가 예를 들어 농민수당을 드릴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 매칭이 된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에 따라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 이 국비 보조를 받는 상황, 거의 아마 상당 부분이 여기에 속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그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부대의견 철회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생필품이라서 이런 게 내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사랑상품권 갖고 차라리 식당이나 옷가게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서 쓰게 하고 그게 오히려 어쩌면 경기 활성화로, 어차피 사야 되는 필수품은 이런 상품권 아니라도 본인들이 사게 되니까 그것은 그냥 두고 편의성보다는 이 자금이 투입되는 목적은, 오히려 국고가 투입돼서 지금 많은 지자체하고 합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취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자금 내에서 활성화를 시키자는데 그러면 안 쓰게 해야, 생필품 쓰는 것보다 다른 데에 쓰게 해야 오히려 더 이렇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는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게 2023년·2024년·2025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도 반영 안 해 놓고 지금 이것을 핸들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달희 위원 아, 제 얘기입니다. 위원님, 정부가 아니고 저의 얘기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정춘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춘생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공산품을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공산품을 판 이익도 그 지역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전부 다 귀속이 되지요.

○정춘생 위원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은?

○위성곤 위원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원읍이시잖아요, 고향이?

○정춘생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남원읍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남원읍 협동조합은 조합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남원에 있는 농민들이 돈을 출자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조직입니다. 중앙회랑은 다른 조직이거든요, 자체 조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거랑 이마트의 남원지점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건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쓰는 돈은 무조건 그 지역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모두가 그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서비스로 공급이 안 되는 게 미용실·식당 이런 것들은 하나로마트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영역들은 하게끔 하고.

그런데 공산품이 어떻게 되나 하면, 공산품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산품을 사려 돈 들고 어디 가냐면 마트에 멀리 갑니다. 대형마트에 가지요. 보면 주로 서귀포에는 하나로마트가 하나……

○정춘생 위원 이마트……

○위성곤 위원 하나로마트는 한 10개쯤 있는데, 열두세 개 있는데 이마트 가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대형마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그런 공산품을 사 오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안을 내신 거고 한 건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재계 한 4위쯤 되는 그룹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이 생활비의 100%는 아니잖아요.

○위성곤 위원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예,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달희 위원 그래서 과소비용으로 쓰자 이거지.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양부남 위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는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하나로마트에서 써도 그게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온다니까…… 그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제로섬게임, 풍선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소상공인들에게 분배를, 포션을 줄 것인가 이것 하나로마트에 나눠 줄 것인가 그 문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면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맞는데 그 이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만 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마트까지 갈 것인지 문제인데 저는 이 논의가 생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조그마한 지역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품목이라든지 용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오늘 갑론을박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상 사업과 대상 지역 외에 대상 품목을 넣어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는 지금까지 재래시장·소상공인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이 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여기에 없는 재화나 용역이 뭐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로마트에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상권에서 우리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에 한해서만 하나로마트에다 풀어 주는, 그렇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대상 사업장과 지역 앤드(and) 대상 품목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와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말씀 끝나셨지요?

○**양부남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 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차관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한다고 했지만 나름 갖게 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고 또 수석전문위원 제안과 아까 모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자체의 조례로 넘기자라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상을 좀 나눠 보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데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행안부 부처와 수석전문위원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 법안심사소위에는 좀 더 진일보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법 개정안을 그대로 잘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완된 의견을 할 건지를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테니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관께서는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4건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삭제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삭제하고 또한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의무화하며 책무 규정의 지원 주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삭제와 관련해서—중간 부분입니다—국립시설인 만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 근거를 삭제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국가 출연·보조 의무화와 관련해서 양부남·위성곤 의원안은 국가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보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국립시설에 대한 출연 의무화 관련 입법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 입법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재정 유연성 측면을 고려해서 법제 원칙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책무 조항의 지원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삭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춘생 의원님 안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3조 책무 규정의 지원 주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려는 안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로써 동법 제3조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크게 3개의 항목입니다만 취지는 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쪽이고 저희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몇 가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광주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의 감독권을 행사했었던 형제복지원의 경우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선감학원, 거기는 도립으로 운영되었던, 폭력이

났었던 곳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자체 책임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출연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국가 출연·보조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법제화의 원칙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책무 조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서 유사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국가폭력이라는 건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특정 지역을, 특정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괴롭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의 범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은 국가가 저지르고 수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하면 피해를 당한 가정이 자기들을 수습하라는 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사례가 경기도 도립이라고 해서 도에서 책임을 진다,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4·3이나 5·18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별인 일이 아닌 것인데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워야 된다는 것은 예산 관리 차원에서 아주 실무적인 것 말고는 법의 제정 취지와는 너무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 가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분리가 안 됐던 시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이,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고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출연금을 국가만 부담하고 그것을 의무화했을 때 다른 사례를 몇 가지 드셨는데 이 트라우마센터의 문제는 그러한 사례하고는 비교 차원이 틀리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원인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잘못한 사례와 국가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원인을 제공해서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민다는 것은, 그것도 트라우마가 소속된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너

무나 무책임한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책임과 국가가 직접 폭력을 야기한 책임은 책임의 양과 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위성곤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합니다.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지금 순서가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배준영 위원님 하시고 위성곤 위원님, 이렇게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정춘생 위원** 저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로 법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부출연기관을 지방의 예산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부가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아니, 설명을 좀 드려야…… 왜 이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장하기 전에.

○**배준영 위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결국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제가 100%, 200%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법체계 관련된 건데 차관님, 보통 이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하는 다른 기관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 입법례도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른 거지요. 국가폭력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트라우마센터에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법안 관련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법에서 빼면 지자체에서 설사 더 보조하고 싶어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근거가 없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측면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해 갖고 개인,

법인, 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 및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이 기관의 설립 주체가 국가고요. 그리고 고용 주체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시설, 장비도 다 국가고요.

그런데 국가가 건물을 설치하고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보고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정부는 아무런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국립으로 한 이유는 국가가 운영 시설 하는데 지방정부 뺏 뜯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을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지방비 50%를 대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다른 기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그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국가가 운영합니까?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디에 참여하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는 사업비,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한 프로그램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출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에 지방정부 책임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운영비를 지방정부보고 내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래서 법률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이 법을 만들 때, 초기에 처음 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정부랑 지방정부랑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 판단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지방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보고 우리가 이 정도 매칭할 테니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왔는데 국가 단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니 국가가 운영비를 내면 지방정부도 출연을 통해서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취지로 저는 이 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설득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조승환 위원님 발언하실……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하시고……

○**조승환 위원**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마치 기재부 때리려고 법 만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위성곤 위원** 아니, 기재부가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희 당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운영비를 100% 하라고 여야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받으면 법안 처리가 이 부분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안 받게 되면 법률로라도 근거해서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사실 앞으로는 운영비에 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여지가 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위성곤 위원**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저도 국립트라우마센터로 해서, 국립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든 이게 시범사업에서 태생이 되다 보니까 아마 5 대 5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조 비율을 높여 가지고 종국에 가서는 100%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인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러면 사업비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일상적으로 해양자원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성곤 위원** 해양자원박물관도 분관을 만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 이런 식이면 정부가 다 지방정부보고 결국 운영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립국악원이 네 군데 있는데 국립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운영 시설이고 국가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혜택을, 지방이 혜택을 보지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내라고 하면, 이런 식이면 모든 것들을 정부가 그렇게 해 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제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가만 해 놨을 경우에는 아까 배준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낼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방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위성곤 위원** 여기에 출연 보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 부분에 있어서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부분들은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 보조 비율을……

○**위성곤 위원** 여당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많은 국가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그런 식으로 떠넘기면 언제든지 예산 가지고 떠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기재부가 이렇게 만드는 시설을 지방정부에 시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그 시혜에 대한 부담은 니네가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 거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을, 만약에 지역구의 이런 사업들을, 국가 사업들을 만들 때 다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법안에 그러한 취지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아야 돼요. 이것 놔두면 안 돼요.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가폭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재원 자체를 책임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에 공동 책임을 요구할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 안 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지방정부 내용을 없앤다 하더라도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든 뭘 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무의 정의에서 혹시 빠지게 되면 그게 적용하기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그게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처럼 책임을 해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 여기에는 수정의견이 없는데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지적처럼 기본적인 경비나 운영비, 설치운영비나 기본경비, 운영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하되 지역으로 새롭게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게 항목이 한 대여섯 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쭉 더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은, 또 다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항목이 이번의 항목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원칙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쭉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지자체와 국가 간에, 우리가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을 국가 하나로 하고 지자체를 빼자는 논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그대로 두고 안의 비율을 아까 조승환 위원님 말씀처럼 80으로 하든, 이게 지자체를 빼면 우리 지자체 특성상 아예 어찌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댈 거다 이렇게 하는데 비율을 여기다 부칙을 달아서 운영비는 전액 국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것 살려 놔야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요. 지자체를 빼 버리면 지자체에서 지금 핫할 때 관심 있는 의원님 계실 때 조금 관심 있는 척하지만 아예 내버려 두는 그런 사업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하여튼 이것은 첫 번째 항목이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또 돌아가서

할 텐데요.

저도 아이디어를 내면 전문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보면 3조 책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출연 및 보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센터인데 왜 지자체에 책임을 묻느냐라고 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기록을 위해서.

다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8쪽입니다. 8쪽의 두 번째 개정사항은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김한규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달라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피해의 유형이나 내용이 다르고 피해의 범위 등 치유센터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관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별·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치유센터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 제5조가 등기에 관한 사항인바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은 제6조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광주와 제주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나 제주센터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 속한 분원으로 등록되어 동격의 법인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양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명칭을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광주센터와 제주센터가 동격의 법인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기존에 설립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신 두 개의 안건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원하고 별도 법인하고. 이 4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광주하고 제주를 별도의 법인으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독립된 하나의 각각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각 기관의 직원이 열세 분 정도 계신데요. 이 법에 의하면 원장 포함해서 15인의 이사가 있고요, 감사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 13명인데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원도, 분원 조항에 있어서도 치유센터라는 게 법 4조에서 법인으로 하도록, 독립된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 조항에 그것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건대 어쨌든 각기 구성,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같이 드셨는데 조승환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다 법이 필요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법을 개정해야……

○조승환 위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해양박물관 그것을 부산해양박물관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인천에 지금 해양박물관이 곧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그러면 인천해양박물관법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부산박물관법을 그러면 해양박물관법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천도 하고 향후에 지나가면 다른 시도에도 해양박물관을 지어 가는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됐던 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같은 것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 예, 우리가 제안한 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따로 지금 하시자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위성곤 위원 법률안에, 해양박물관법이 지금 있지요?

○조승환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인천에 만들어지니까 인천 의원님들이……

○소위원장 윤건영 마이크 대고.

○위성곤 위원 예.

인천 의원님들이 해양박물관법을 부산박물관으로 하고, 인천박물관으로 하자 이렇게 인천박물관 개정안이 올라온 거지요. 기구가 설치됐으니까 어딘가는 설치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거기에 설치 근거를 남겼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는 ‘우리가 국립해양박물관을 해 았는데 왜 부산 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안심의를 할 때 부산은 이제……

○조승환 위원 뺐고.

○위성곤 위원 빼고 인천만 인천국립해양박물관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인천해양박물관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위성곤 위원 아니, 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로. 법령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해양박물관법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트라우마센터라는 법 안에 지금 기구가 설치될 때마다 하나씩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부산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부산은 ‘부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한다, 인천은 ‘인천’이라는 단어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처리를 했지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위성곤 위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조승환 위원 똑같아요? 저는 그게……

○**위성곤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은 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광주에 있고 지금 법령 체계에서도 센터는 독립되어진 성격으로 제주트라우마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거니 이제 트라우마센터에 광주트라우마센터·제주트라우마센터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분원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광주는 5·18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순이라든가 과거사 문제가 발생하면 여수·순천에 피해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그러면 그것의 분원이 필요하겠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피해자에 가까운 곳에.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게 분원입니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만 만들어져 있는데 서귀포시에 분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1시간 이상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서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분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게 필요에 따라서 확대되어지면 그런 기관들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각기의 트라우마센터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센터장이 인사를 해서 사람을 뽑은 형태가 아니고 각자 독립적으로 뽑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니까 그렇게 그걸 반영해서 법률에 넣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조승환 위원** 아니,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순천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수·순천 의원님들은 광주의 분원으로 원하시지를 않으시겠지요. 광주의 분원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별도의, 예를 들면 여수·순천트라우마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한테 질의하시고요,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위성곤 위원** 그러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여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법령 근거를.

○**조승환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데 분원으로 만들 때는 그런 근거가 필요가 없지요.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독립적인 법인 성격이 다 있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국립센터를 만들 필요는, 제 생각은 시도 단위 정도에 있으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장 윤건영** 아까부터 계속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정춘생 위원님 발언 듣고 이달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현재는 지금 원래는 제주트라우마센터가 분원 성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규모나 보면 오히려 제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 현황도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엄청 늘어나고 있고 제가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범운영할 때 제주트라우마센터를 갔었거든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적은 인원 갖고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방문상담도 하고 방문치료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정식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아까 13명을 15명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이거 적은 숫자예요, 이용 현황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출범시키고

한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는 또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다 별도의 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고민하는 것도 새로운 검토사항이 됐으니까요.

○조승환 위원 현재도 다 법인은 법인이잖아요.

○정춘생 위원 아니, 지금은 독립 법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승환 위원 독립 법인인데?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정춘생 위원 분원이에요, 현재.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하셨지요,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조금 전에 조승환 위원님하고 설명했던 거 제가 옆에 행정실 통해서 자료 잠깐 찾았는데요.

해양박물관법을 21대 배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위성곤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개정안의 법인격에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내셨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성곤 위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처리가 됐구나.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장관이셨을 때예요, 아마.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또 리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한 줄만 남겨 놨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양부남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예.

○양부남 위원 지금 분원으로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법인격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명칭이 분원인, 분원이 실제로 그 명칭에 상부한 분원이 되려면 광주에서 운영에 개입도 하고 뭔가 돈도 보태 주고 또 직원도 파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현재의 운영 실체에 부합되게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수·순천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광주 5·18에 관한 트라우마 환자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부마항쟁을 비롯해서 전남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 현재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성희 위원님 말씀……

○김성희 위원 법안에 보니까 재원 마련은 국가가 하도록 못 박혀 있네요. 그 밑에 '출연 및 보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운영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법안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법안에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지자체가 안 하면 안 되

겠다라고 기재부가 마음대로 틀어 놓으니까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입법의 취지는 1945년 이후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치유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못 박아 놨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에서는 기재부가 ‘그건 아니고 자자체 좀 내시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입법권으로 세세하게 일일이 다 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제가 차관님께 호소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재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입법부 입장에서는 해석을 못 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서로 겪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또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다음 안건 리뷰하고 다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문상** 14쪽입니다.

14쪽의 네 번째 개정사항은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련 사항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정관에 따라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정관으로 분원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경우에 기타 법인보다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원 설치 등을 협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트라우마치유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기존 사유 외에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결격사유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먼저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언급처럼 이게 국가가, 만약에 정말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와 관련해서도 결격사유는 우리 행정기본법상 결격사유가 권리·의무를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까 언급 주신 것처럼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이것도 이렇게까지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위 위원장이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던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적인 역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있으니……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예전에 규범으로써 상호 간에 지켰던 기본 예의가 어긋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입법이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정춘생 위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정관을 넣은 이유는 앞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6페이지랑 7페이지 보시면 출연·보조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자. 왜냐하면 4·3인 경우는 보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일부는 좀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업에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조항을 넣어 줘야 기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꼭 정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사항이 아니더라도 분원과 관련되어서는 꼭 정관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출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출연금은 기부금 그러니까 국가에 따르는…… 제17조에 보면 국비 지원과 기부금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국가 외의 자의 출연·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하자는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이렇게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건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전문위원님 다음 건 보고 빨리하고 정부 측 의견 들어서 묶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문상 21쪽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개정 사항이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단체 등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시행일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또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등의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관련한 리뷰를 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차관님께……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잠시만요.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이 마지막 항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론을 같이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전반적인 겁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런 유사, 국가폭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하는 트라우마센터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거는 안전사고 난 안산이 있을 것 같고, 세월호 관련, 그렇지요? 그리고 포항이 지진 관련해서 있을 것 같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방행정에 참여해 본 경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직원 13명이 다 정규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정규직입니다.

○**이달희 위원** 정규직이면 지금 최하위 직급부터 최고위 직급까지 정확하게 자기 직위가, 직책이 나눠져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13명이 들어가서 1명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움직임 자체를, 승진이라든가 좌우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한 몇 년쯤 되면 떠나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여기 작은 조직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자기 평생 직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의 트라우마센터가 역할이 다 다른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센터랑 안전 트라우마센터랑 이런 게 역할이 너무나 확연히 다르면…… 저는 국립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해낸다면, 정신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주 업무라면 다 같이 한번 조정해서 이분들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인사 이동도 가능하고 직장으로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하다 보면 반드시 야, 이렇게 뒤서는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기관 하나하나를 둑어 놔 버리면 숨통이 안 트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지금 우리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건립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김성희 위원님 ‘기재부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니까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바로 읽어 보니까 이게 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연구·조사·지도·상담·재활·지원·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빼기도…… 이거는 입법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박물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해양박물관법을 두고 부산, 인천 더 지나면 제주 뭐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그 당시의 입법취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위성곤 위원** 아니,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요구한 대로 이런 형태로.

○**조승환 위원** 그게 형태가 다른데요. 저는 그러니까 국립해양박물관법 하나에 부산, 인천, 대전……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배준영 의원께서……

○**조승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렇게……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달희 위원** 이것도 두 개 들어가잖아요.

○**위성곤 위원** 트라우마법이라는 법 안에 광주, 제주를 넣은 거지요.

○**이달희 위원** 두 개 분원을 그냥 지역센터로 가자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센터를 봤더니 거기는 광역으로 둘 수 있게끔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광역으로 두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고 있다는……

○**조승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조금…… 제 뜻대로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지금 우리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항만 쪽 이야기를 드리자면 항만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항만공사 네 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한 20여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부산항만공사가 지금 사실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현행 법인격을 두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서 법체계 부분은 굳이 이렇게 별도로 법을 바꾸어서…… 또 예를 들어서 면 이야기라 그러십니다마는 여수·순천에 트라우마센터를 만든다 또 부산에 트라우마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러면 건건이 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도 운영을 위한 법인격은 다 갖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광주트라우마센터에 있던 사람이 제주도 갈 수 있고 제주에서 또 올 수도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관을 갖고, 위성곤 위원님이 시행령도 팬찮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정관을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대체로 수익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데고 트라우마센터가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여질 것 같으면 향후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다 국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격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배제를 한다는 건데 어떤 특정인의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걸 넣어서 그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든지 아예 그렇게 넣는다든지. 그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부금, 개인 기부, 운영재원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대통령령일 때 무거워져서…… 정관으로 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되면 이제 운영하기가 무거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뭐 결정하는 대로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분원 설치 가지고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법 개정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법을 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운영의 실상과 법을 일치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광주에서, 제주분원에서 업무상 지시권이 없다면 독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발의자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법 제목을 봅시다, 법 개정을. 그냥 트라우마치유센터법도 아닙니다. 그냥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도 아닙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예요. 그래서 폭력의 원인자인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안전 트라우마도 아니고 무슨 공적기관의 폭력도 아니고 국가폭력입니다. 제목 자체가 국가폭력이에요. 원인 책임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재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의무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의무조항도 필요하고, 저는 그 책임주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살려 놨는데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해요. 살려 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경비는 국가가 대야 됩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광주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이 5·18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만 아닙니다. 부마항쟁 환자들도 광주에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부마항쟁도 되니까 부산에다 이걸 설치하면 부산 지자체가 돈 내야 되네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경비를 100% 국가가 내야 된다고. 기재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의무화를 시켜야 되고.

○**조승환 위원** 기재부도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안 변해요.

○양부남 위원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센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50%씩 돈을 내야 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100% 주고, 기재부 말을 안 들으니까 의무조항.....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차관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기재부에서 계속 반반씩 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승환 위원 그거는 기재부를.....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정춘생 위원 사실은 이 예산도 행안부는 전액 국비 하는 걸로 예산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반대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요.

○조승환 위원 그런다고 법을.....

○정춘생 위원 기재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질서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시거나 이야기,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시간도 저희가 1시간 한 40분 정도 됐으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6분인데요. 4시 2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조금의 이견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아까 나왔던 이견들은 이견들대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좀 발라내는 작업들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순서를 좀 바꿔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의논하고 그다음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행안부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큰 종이로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요. 이걸로 봐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보류 주제가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 확대 부분입니다.

현행은 미성년자 그리고 회원가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6개월을 12개월로 연장을 하고요. 12개월 미만으로 하고, 출자규모가 정관 또는 행안부 고시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쟁점이 회원가입기간을 강화할 시 기존 임원에게 유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출자규모의 경우에는 농어촌에서는 소액 출자규모도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 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모두 새마을금고의 현행 가입기간 6개월, 출자규모 비제한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회원유지기간은 6개월로 하는 소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고시 금액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으로 방안이 수용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데요. 앞서 수석께서 보고해 주셨지만 쟁점 안건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가면서 쟁점이 없는 건 없는 대로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쟁점이 있는 건 다시 또 빼고요. 그래서 1번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대신에 정관으로 하는 규모의 금액이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성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성권 위원** 이성권입니까, 위성곤입니까? 발음을 좀……

(웃음소리)

○**위성곤 위원** 저를 보면서 했으니까……

○**조승환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 번호 넘버링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요건 확대에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중 대의원회선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총자산 2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투표 그리고 미만과 직장금고일 경우에는 회원투표·총회선출·대의원회선출 중 택 1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투표로 같은데요. 2000억 미만, 직장금고인 경우에 회원투표·총회선출 중 택 1, 즉 대의원선출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쟁점은 행안부와 중앙회는 금고 비용 과다 소요 및 총회 개의요건 충족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제기했고요. 찬성하시는 의견은 일부 대의원회는 이사장 등 특정 인력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직장금고 등의 경우에는 대의원선출 방식의 유지가 필요합니다만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셔서 대의원제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저는 대의원제로 선출하는 것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완적 조처로서 총회선출에 회원들의 투표소를 총회 장소로 하고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약간 대의원제가 절충이 되게끔 하는 구조로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저는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데 대의원제를 폐지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걸 둔 상태에서 이걸 폐지를 해 버리는 것은 조금은 문제 아니겠는가. 우리가 차관님 이야기하신 대로 장기적인 검토로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제 보고를 받았더니 대의원제와 그다음에 총회선출이 사실은 대의원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총회선출이 워낙에 적어서 최소한의 방향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총회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오면,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높여 가겠다……

실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금고가 작은데, 자산이 적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지금 투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총회선출 방식은, 선거비용의 관리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방식은 총회를 200명으로 성원이 된다고 하면 성원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투표시간을 지금은 1시간 정도밖에 두지 않는데 6~7시간 이렇게 두게 하고 그러면 충분히 대의원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좀 받고 최종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취지는 다 동의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대의원제, 대의원대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보고를 받아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내년 3월에 선거예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 그렇군요.

○이달희 위원 저는 의견을 대의원제와 이사장 임기제랑 이렇게 같이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의원제가 장기 이사장 그리고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고 이런 것 보완 때문에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총회선출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할 때 대의원제를 할 경우는 연임 정도만 제한한다든가,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대의원대회가 갖는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연임에 대한 승인 정도만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선출은 총회나 회원투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단서를 달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달희 위원 선출도 대의원이 선출할 경우는 이사장을 연임 정도만 하고 다른 경우는 풀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을……

○이성권 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년 3월이라고 해 버리면, 로드맵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3월이라 하면 3월 달에 일괄적인 전국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우리가 법안 할 수 있는 최대치, 최대 마지막까지 해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대의원제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다시 문제가 있는데 부활을 시키기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오늘 당장 결정 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취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 보는 걸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충적 지점은, 회원 대의원 평균 수가 120명이거든요. 확인해 보면 500명 미만이 회원인 금고는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1000명에 120명이면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회의 정족수는 또 250명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의 제도보완 과제를 좀 작성해서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럼 시한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3월이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2월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야지 법안을 수정을 하든지 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12월이 되면 늦어 버리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 그래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1월 12일 전까지는 어떻든 간에 형태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1월 국회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는 안을 마련해 오면 하여튼 간에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 우리 전체회의가 있는데 내일 전체회의 말고 그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개선안을 내 주시는 걸로, 가능하실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대의원대회하고 임기하고 개의 정족수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위성곤 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춘생 위원 대의원 투표하고 회원 투표하고 절충하는 방식도 있지 않나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다음 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세 번째, 대의원 선거운동 제한행위 명시입니다.

현재 선거운동 시 제한행위가 임원 선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인데요.

반대 의견은 일부 지역 대의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찬성하시는 의견은 대의원회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예는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선거운동 제한이 정관 등에 규정이 되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소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이견 없으면 넘어갑니다. 합의 처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불법선거 자수자 형의 필요적 감면 특례 대상 축소 부분입니다.

현행은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3호에서 1호와 2호를 수령·승낙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물론 후보자·배우자,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거짓 방법으로 수령·승낙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챙점은 재산상 이익 등의 수령·승낙자 외에 알선자도 형의 필요적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개정안을 희망을 합니다.

선관위의 위탁선거법은 자수자 특례 대상에서 알선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저도 이걸 꼭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위탁법하고 법의 법령이, 저희들이 개정했을 때 저희들의 개정안과 위탁법하고 괴리가,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개정안으로 갑시다.

○이달희 위원 개정안으로.

○위성곤 위원 예, 개정안대로.

○조승환 위원 위탁선거법에 따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정리됐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됐습니까?

○**이달희 위원** 개정안으로……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양부남 위원** 제가 철회 아닌 철회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합의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총회 개의요건 특례 적용기준 강화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특례가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는 151명 이상의 출석입니다. 개정안은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는 251명 이상 출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금고는 251명 출석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합의된 걸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총회의결사항 일부 회원투표 갈음 허용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회원투표 갈음 허용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쟁점은 임원의 해임은 제외해 달라는 행안부와 중앙회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 농협만 임원 해임에 대해서 회원투표로 갈음을 허용하고 있고 참고로 농협도 총회 의결정족수보다 회원투표 의결정족수를 높여서 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을 수정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사례를 준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3분의 2에 동의합니다. 정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수정안 동의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성권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임을 제외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안은 임원의 선임까지만 동의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해임은 제외하자는 말입니까, 개정안에서?

○**조승환 위원** 아니, 3분의 2 아니었습니까? 3분의 2로 해임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관련 3분의 2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 수정안이지.

○**이달희 위원** 그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안을 좀 정확하게, 아까 정부안은……

○**이성권 위원** 농협하고 똑같이 가는……

○**소위원장 윤건영** 농협안을 수용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안은 농협, 3분의 2 이상 이 안을 수용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여서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그래요? 해임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회원들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농협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의결정족수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달희 위원** 그 정도는 해야지.

○**이성권 위원**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없는데……

○**정춘생 위원** 그런데 3분의 2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지금 회원투표 갈음 허용이 해산·합병은 기준이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과반입니다.

○**위성곤 위원** 과반이지요? 그러니까 해산·합병은 과반인데 해임은 3분의 2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해산·합병이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조승환 위원** 해산·합병은 행정적인 거고 해임은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게 안정성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산·합병은 3분의 2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야 말이 맞지.

○**위성곤 위원** 3분의 2이고 해임은?

○**이성권 위원** 해임도 3분의 2 하자는 거예요.

○**양부남 위원** 3분의 2로 하겠다는 거지.

○**위성곤 위원** 그러면 회원투표 갈음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리 중앙회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해산·합병 같은 경우는 3분의 2고요. 그다음에 임원 선임하고 해임은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투표 특례에 한해서 3분의 2로 농협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만약에 해임을 제외 안 하실 거면, 회원투표로도 해임을 하실 수 있게 하실 거면 농협 예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총회에서도 해임 의결을 할 수 있고, 대의원회든 아니면 총회든?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대의원회든 총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회원투표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얘기인 거지요? 방법을 하나 더 넣은 거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위성곤 위원** 회원투표로 할 수 있는 게, 회원투표도 3분의 2입니다니까, 아니면 회원투표는 과반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지금 여기 안대로 하면 과반이 되는데요.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과반이 되는데 이거를 농협의 예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수협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해임을 회원투표로 하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3분의 2로 하고 가시지요.

○**이달희 위원** 3분의 2 하시지요.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투표를 허용을 해 주려면 3분의 2로 올려 달라 이 말입니까, 요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회원투표 이외에 대의원회나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면 과반수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투표 할 때 3분의 2로 해 달라는 것은 바람몰이 이런 투표를 하면서 그런 부작용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양부남 위원** 없애거나 하려면 3분의 2로 해 달라?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양부남 위원** 3분의 2는 모으기도 힘드니까? 그거 아닙니까?

○**조승환 위원** 모으지요, 회원투표인데.

○**정춘생 위원** 못 하지요. 힘들지요, 3분의 2.

○**양부남 위원** 3분의 2 힘들지요. 3명의 2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없애거나 3분의 2로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모여 가지고 하면 과반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총회나 그다음에 대의원회에서 정관의 변경이나 해산·합병, 휴업, 임원의 선임·해임을 할 수 있는데 회원투표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데 회원투표가 더 어려운 건데, 그렇지요? 어려운 조항이잖아요, 사실은 쉬운 조항이 아니고 회원투표가.

○**양부남 위원** 저는……

○**위성곤 위원** 나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하고 중앙회 수정안이 대의원회나 총회에서도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 회원투표 제도로 하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그걸 굳이 들어 준다면 3분의 2로 높여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양부남 위원** 저는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3분의 2 정도로 올리면.

○**소위원장 윤건영** 다만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총회에서는 과반으로 되는데 회원투표에서 굳이 3분의 2로 허들을 높여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총회나 회원투표라는 게 같은 모수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금고법 전체적인 체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총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이렇게 의사결정기구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신 회원투표라는 건 법 조문 자체가 특례를 인정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특례를 지금 이 조항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운영되는 게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특례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상황이고요.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제출된 안에 해산·합병은 받고 임원의 선임은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외 다른 전체적인 상호금고 수준이 그렇고요.

○**위성곤 위원** 받겠다는 거고 해임은 3분의 2 정도로 높여 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농협 사례이니 농협 사례에 맞게 3분의 2 규정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회 회장 권한 제한·분산 및 회장 중임 제한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중앙회장 권한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회장 임기는 중임은 무제한,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중앙회장 권한을 대외업무 권한과 직원 임면 권한, 두 가지로 축소하게 되겠고요. 중앙회장 임기가 중임, 연임 모두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 의결을 전제로 해서 이성권 위원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위성곤입니까, 이성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성권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곤이 이성권에게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성권이 위성곤에게 말씀드리는 데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대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페이지입니다.

중앙회 경영대표이사 직위 신설 부분인데요. 현행은 지도와 전무이사가 있는데 개정안은 경영대표이사로 통합 수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쟁점은 위의 사항과 같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 수정수용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개정안이 경영대표이사로 통합이 되는데요. 경영대표이사에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있는 전무·지도이사 체제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은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이것도 이성권 위원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춘생 위원 현행대로 하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행이면서 그분들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성권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너무 싱거운데요, 이것.

○이성권 위원 화끈한 거지, 솔직하게. 싱거운 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아니, 본인이 발의하고 그냥…… 이게 혁신안의 핵심이던데.

○양부남 위원 이 개정안이 좋던데……

○이성권 위원 천천히 갑시다.

○이달희 위원 오케이.

○박정현 위원 현행안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의견 없으시면 현행안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현행안인데 이게 현행의 대표이사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대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지요?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합의 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소속·구성 개편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중앙회 감사위원회가 소속이 중앙회 그리고 외부인사 5명,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을 하게 되는데요. 개정안은 소속이 이사회, 감사위원이 이사 겸임을 통해서 5명,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해서 이성권 위원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류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먼저……

○**이성권 위원** 제가 없는 동안에 많았네요, 저한테 결정권을 맡긴 게.

정부 측에 빨리 오케이 하랍니다. 저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현행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회 이사회 및 임원 구성 개편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 표를 보시면 이사회 구성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중앙회 요청사항을, 지역이사·금고이사장이사를 13명으로 두고 전문이사를 더 확대하는 중앙회 요청사항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확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사 열세 군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13명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9명 동의합니다.

단, 그 밑의 것하고 같이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임원 선출 노력 의무 신설에서 ‘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임원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이사 9명 중에 3명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적 목표제로 해서 10분의 6을 한 성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거든요. 지금 22명에 3명이면 이사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여러 가지 법에서…… 지금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사전 미팅에서 얘기하는데 경제학자도 있고 금융인도 있고, 금융인들도 여성 찾아보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전문이사 중에 30%가 아니라 총 이사 중에 3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3명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달희 위원** 예, 13명 중에 또 여성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전체 26명 중에 3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노력한다’가 아니고 ‘한다’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26명에 3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30%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달희 위원** 그 지역의 13명은 누가 뽑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30%면 8명이고 8명이면 지금 금고이사장 중에 이사로 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문위원은 전부 다 여성으로 구성되는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서……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의견 나온 게 전체 스물여섯 분의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하자는 수정제안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의무조항 저희가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아니고 전체 임원 중의 여섯 분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임원 중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위원회에 임원이 몇 분 계셔서……

○**위성곤 위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사회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구성도 손을 봐야 돼요. 감사위원에 여성 1명은 무조건 넣게끔, 그렇게 임원으로 넣으면. 왜 그려나 하면 충분히 여성 인력이 있고 여성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승환 위원** 중앙회에서 이게 도저히 힘들다 이런 내용이 되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양성평등법상으로도 맞고 지금 공공기관 임원 규정이 갈수록 여성 비율이 순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까지 증대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에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달희 위원님이나 정춘생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판단으로는 무리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무리하다라면 당장은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위성곤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행에 보면 전문이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서 5명의 이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고 입장에서는 실제 금고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 여성 의무할당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저는 이성권 의원안을 고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명에 9명에 9명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든지 판단하십시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3명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새마을금고에서 받고 말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차관께서 이야기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회……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지역이사장 13명 중에 현재 여성분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1명도 없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박정현 위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지역이사장 13명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게 지역본부가 13개다 보니 지역의 대표성이 때문에 13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그것 아는데, 이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퍼센트가 높아요, 내부인사가. 그것을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이사장은 권역별 13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는 권역별로 뽑는다든지, 이게 과연 전문이 사가 여기에서 의견별로 의견에 따라서 금고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약간 저는 회의가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아홉 분의 전문이사를 둔 이유는 제의권이 가능…… 3분의 1이 가능해서 그 아홉 분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양부남 위원**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는 26명 중에서 3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사.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전체 26명 중에 여성 임원을 3명 이상으로 의무조항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가면 될 것 같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금고 이사장 장기 재임 제한 규정입니다. 현행은 중임이 무제한이고 연임이 2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중임 2회, 연임 1회 그리고 신설되는 것이 퇴임 후 다른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제도가 최근에 개정이 된 점을 고려해서 현재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현행대로 하면 언제 수정할 건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현행 제도가 바뀐 지가 1년 됐고 그전에 의원님들이 한 2000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셨었습니다. 논의 결정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도가 1년 됐으니 이것도 진행 경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말씀을 잠시만 드리자면 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 러더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중임 무제한’ 아래 놓으니까 저도 좀 솔직한 얘기로 거슬리기는 거슬리는데, 그래서 기간도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했다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받아 주고 좀 보시지요.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중임을 완전히 막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중임 두 번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하는데 보니까 형편없다, 저 사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이게 제도적으로 탁 막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행대로 하고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현행대로 하고, 다만 매년 이사 선거 관련해서 이사장이 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중임 무제한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연임 2회는 개정안처럼 연임 1회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임을 2회 하면 12년을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3선은 너무 지루한 것 아닌가요? 연임은 1회 하면 8년 하고 중임은 무제한 하고.

○**이달희 위원** 선출직 자치단체장도 자기들은 세 번 하고 우리는 왜 두 번만 하냐 어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

○**양부남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개정안에서 연임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어떠십니까? 중임은 현행대로 하고 연임을 2회가 아니라 1회 정도로 하자는……

○**양부남 위원** 8년만 하자 이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사장의 임기, 재임 기간 관련해서는 사실 논의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낙 이해관계들도 많이 걸려 있고 그동안도 이런 논의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들을 하셨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도. 그래서 그것은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다음번 회의 때까지 보고하시기로 했던 내용에 넣어서, 어쨌든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갖는 우려들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금고 이사장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생기는 우려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성권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금고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에 보면 시행 후 2년간은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100%까지 확대를 전제로 유예기간 및 기간 중 점진적 증가 비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씩 인상을 해서 80%를 인상을 하고 향후에 금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역금고의 여러 가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종의 수정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3년에 80%, 그러니까 1년에 10%씩 점진적으로 늘리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분들……

○이성권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측 수정안대로 합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부실채권 매각 대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3개고요. 이것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쟁점은 중앙회·금고 재무건전성 개선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 확대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경영비용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있는 MCI 대부 등을 향후 장기적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병도 위원님.

○한병도 위원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부실자산들 대부분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참여와 연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또 부동산 PF 사태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회에서 그래서 부실채권을 갖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준 게 채권 매입 규모에 비례해서 매입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 단위의 부실채권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새마을금고 채권 하나만 갖고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든다는 건지 저는

그 설명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고 자산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는 아직도 급한 불은 끄고 대규모 부실 폭탄으로 다시 돌려막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농협은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있다고 하지만 자산 순위가 새마을금고 1.5배 수준이거든요. 수협이나 신협도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려가 듭니다. 하나는 부실채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부실채권 매입을 기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해가 있지 않으면 저는 현재 이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이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뒤의……

○**한병도 위원** 예, 뒤에서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금고에서 나오신 전무님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분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중앙회 전무이사 황길현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수익구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금고의 부실자산 자체를 자산관리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경·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자산관리회사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MCI 대부분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자산을 매입을 할 때 회계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지금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그게 50원이 될 수도 있고 70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새마을금고 채권 하나만 가지고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한병도 위원** 자신 있다 이겁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농협 같은 경우도 농협에 관련된 부실채권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자산 규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5배 정도 되는데 그게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MCI 대부분하고 대부업체를 통해서, 자산관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부실채권 매입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한 5조 원어치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수익은 한 60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병도 위원** 그것 좀…… 그러면 이게 부실채권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는 건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지금 현재는 경·공매를 통해서 하는데요. 자산유동화법에 이게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게 하려 그러면 자산유동화법을 또……

○ **한병도 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 **한병도 위원** 그것이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면, 개정이 되면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 **한병도 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 **조승환 위원** 전무님, 마이크……

○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한병도 위원님 말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 **조승환 위원** 안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 **한병도 위원** 걱정이 아직 저는 해소가 안 되고요.

○ **소위원장 윤건영** 더 질의하십시오.

○ **한병도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아니,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 **한병도 위원**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 **조승환 위원** 지금 부실이 나는 게 금고중앙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금고입니다.

○ **조승환 위원** 금고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금고가 PF가 됐든 어떻게 채권에서 부실이 났을 때 그것을 적기에 감정에 의한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자산관리회사가 일단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 **조승환 위원** 쉽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더 돈이 많은 중앙회가 지역 것을 일단 안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장 경·공매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싸게 사 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조승환 위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부실을,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금고들의 부실을 적시에 적당한 가격으로 안아서 지방에 있는 금고를 전자화시켜서 정상화시키고 그 리스크 자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단은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로……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출자회사를 통해서 중앙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 **조승환 위원** 의미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부실채권제라는 게, 시장에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 **한병도 위원** 이런 게 왜곡될 우려가 분명히 현재도,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되겠지요.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각 단위에서 기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으로서는 저는 아직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위원님, 금고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그럴 염려가 없는 게, 그러니까 금고 채권을 100%를 다 주고 자산관리회사에서 사면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데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50원에 살 수도 있고 40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담은 금고가 지어야 되는 거라서 금고에서 중앙회를 믿고 그냥 대출을 막 운용하고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 **한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각 지역의 금고들이 안고 있는 부실자산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 중앙회 까지 재정 건전성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아울러서 지역금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선뜻 결론을 못 내렸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어쨌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 지역금고들의 부실 금고를 털어 내고 어쨌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도 있으신 것 같고요.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명확히 주무관 청 행안부에서도 잘 새겨듣고 그리고 금고중앙회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쟁여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위원** 이걸 오늘 처리한다고요?

○ **소위원장 윤건영** 예.

○ **한병도 위원** 저는 아직 설득이 안 되는데……

○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 **한병도 위원** 이게 결국은 아직도 급한 불은 분명히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결과적으로 부실한 폭탄을 돌리는 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분명히 한번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설명한 걸 통과,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걱정과 우려가 아직 큽니다. 우려가 해소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실폭탄 돌리기라는 이게, 아까 제가 여러 이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려를 아직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면……

○조승환 위원 위원님한테 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요.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행안부장관의 금고·중앙회 직원 제재처분 권한 신설 부분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임원에 대해서는 직접조치·조치요구 모두 가능한데 직원에는 조치요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도 직접조치·조치요구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직접조치는 타 입법례 대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소위원장님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을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합의기구,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달희 위원 반드시 절차, 행안부 내의 합의기구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결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 근거 신설 부분입니다.

현행은 회원 주소·거소로 발송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정번호 수신제한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건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일단 개정안으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닙니다, 나중에 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현행 유지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의견은 현행 유지하고 개정안 반대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걸 개정안을 해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전자적 수단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 부분만 짚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시대가 어쨌든 이런 조치들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 넣자는 거지 이것만으로 갈음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안을 없애고 전자 방법으로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부가하는 건데……

○**정춘생 위원** 이것 하나 방법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특정번호 수신제한 회원 이런 경우는 운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들이 의견 모아 주시면 개정안을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논의하시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혹시 수신거부를 하신 분들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을 오늘 얘기를 하라 그러셔서……

○**박정현 위원**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게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합의해 주시면 저희는 개정안 팬찮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 수용 가능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개정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지금 시간이 17시 21분입니다. 17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쟁점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조항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이게 새마을금고중앙회라든지 지역금고에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를 행안부차관이나 뒤에 배석하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께서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해서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좀 전제를 말씀, 동의를 하는데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게 방금 토론 과정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국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실채권 시장가격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이런 논거들을 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금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어떻게 기하겠다는 점 등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관련 보고는 차관님, 챙기셔 가지고 한병도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12월 중에 정부 측 개선방안 보고를 받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역시 지난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별지로 배부해 드린……

○**소위원장 윤건영** 별지 넓은 것 이걸로 보시고……

○**전문위원 조문상** ‘여순사건법 개정안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 결과’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개정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안건이 교섭단체별로 좀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교섭단체별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국민의 힘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안부 역시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진상규명 신고가 191건이었고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셨던 희생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에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두 차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신고기한 연장은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떻게 할까요? 이번 건도 지난번 건처럼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전체 리뷰를 죽 다 끝낸 다음에 의견을 여쭙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병도 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사기한 연장……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말씀 주시고, 정부 측 차관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죽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조사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장 5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국민의힘은 1+1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밑의 보고서 작성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소한 1년 이상,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법률 상향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 행안부는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성별 고려 규정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추가와 관련해서는 위촉직 위원 9명 중 6명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는 6명,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4명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시 균형 있는 역사관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재심 청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완료 후 추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독립위원회가 아님을 고려해서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신설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행 방법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특별재심 등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한 연장 관련해서 최대 4년, 1+1 안을 희망합니다.

보고서 작성기한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게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법률 상향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만 만약 하게 되면 성별 고려 조항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관련해서는 저희는 한 3명 정도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 작성 시 균형 있는 역사관 고려에서 균형 있는 역사관을 명확하게 좀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조금이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와 이 과거사법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진상보고서 국회 보고는 이견이 없고요.

특별재심 도입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서 추후에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점을 고려해서 나머지 독립조사위원회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 등 관련 사항은 이미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데요. 구분된 쟁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되고 쟁점별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저는 기한부터, 기한을 끓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협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상규명 신고기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위축되고 겁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몇 년간 열어 놓고 특별 신고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에 부담을 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연장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5년이나 4년이나 할 것 없이, 1+1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해서 조사기한은 그냥 4년으로 연장하고 작성기한은 4년으로 연장한 것을 전제로 해서 행안부 입장처럼 현행 유지 정도 하는 수준에서 같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일단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일단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은 우리가 신고, 그러니까 피해자 신고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사기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조사가 빨리 끝나고 마무리 짓는 게 저는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예 2년이면 2년으로 이렇게 풀(full)로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 1년 해서 너희 열심히 빨리빨리 조사해라 그리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한다 이게 어떤 조사 목적이나 이 법의 취지상 더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기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보고서를 무슨 2년씩 이렇게 써야 되느냐, 과거 입법례를 보고 해서 지금 정부 입장대로 6개월로 하고 이 부분도 역시 너무 양이 방대해서 조사를 종료하고 보고서 쓰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또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기한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로 해 보니까 여순 사건 진상규명조사 개시한 이후로 회의가 딱 아홉 번 열렸습니다. 아마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여섯 번은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해서, 다른 위원회들은 강행규정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말 그대로 만만디로 늘어지고 있어서 늘리자고 하는 거지 지금 조승환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이 원만하게 잘 돼 왔으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지금 다 돌아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됐던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제가 조사기간을 자꾸 줄이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은 아닌데 이 조사 목적이나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만디 하고 있으면 만만디 안 하도록 독촉을 하고. 차관님,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추가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아마 지금 9월 기준으로 9% 정도 처리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니요, 그 이후에 더 처리를 해서 현재 1800건을 처리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작업 속도를 보건대 내년에는 7000건까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사람이 보강이 되고요. 프로세스도 상당히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고 어쨌든 내년까지는, 1년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올해 9월 기준으로 900건 처리하다가 갑자기 지금 1800건이 된 거긴 한데, 여하튼 2년 동안 1800건 처리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머지 5000건을 다 처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아, 그렇겠군요’라고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전에 좀 부족했던 게 일단 사람이 모자랐던, 전문위원이 모자랐던 부분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조금 개선을 했고 또 전남 쪽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의견 있으시면……

○**위성곤 위원** 제가 기한과 관련되어서 중재안을 좀 내면,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대통령령으로 판단해서 하는 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기한 연장은 국민의힘도 1+1은 동의하는 거니까 1+1 정도로 해서 보고 또 필요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달희 위원** 예, 그렇지요.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조사기한 종료 후 6개월은 6개월+6개월, 6개월이 안 되게 되면 6개월을 더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충 이 정도의 절충 좀 하면 어떨까요?

○**조승환 위원** 저는 6+6 좋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정춘생 위원** 절충안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도면 정부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보고서 기한 6개월+6개월 말씀이시지요?

○**위성곤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진상규명 신고기한을 위원님들께서는 4년 연장,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판단해서 하시게끔 하고, 판단을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동의하실 거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한은 6+6. 6개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60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제주 진상 보고서 과정을 보면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판단할 몫이니까, 판단 몫을 넘겨주는 거니까 동의해 주실 것 같고. 야당 위원님들만 동의하면……

○**소위원장 윤건영** 조사기한 정리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조사기한 작성은 6개월+6개월로……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보고서가 6+6이고 조사기한.

○**이달희 위원** 1+1.

○**정춘생 위원** 4년.

○**위성곤 위원** 조사기한은 1+1 이렇게 해서 4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6000여 건인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고 아래 가지고 2000여 건이 남았다 그러면 조사기한 당연히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판단……

○**이달희 위원** 조사기한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사를 마쳐야 유족들한테 보상도 빨리하니까 위원회는 1년 안에 마무리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1년 연장한다 그래서 1+1로.

○**소위원장 윤건영** 이거는 부처에서는 답변하기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위성곤 위원** 다 동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동의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부가 판단하는 걸로, 조사기한은 1+1, 2년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간은 6+6 해서 1년, 이견 없으신가요?

○**전문위원 조문상** 위원장님, 잠시만……

그러면 진상규명 신고기간이 현재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전문위원 조문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조사기한은 1+1년……

○**소위원장 윤건영** 예, 1+1.

다시 정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신고기한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라는 거고 조사기한은 1+1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간은 6개월+6개월 해서 1년 이렇게.

○**박정현 위원** 1+1이라는 게 2년인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합이 2년. 조사기한은 2년.

○**이달희 위원** 아니아니, 최대 4년.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앞으로 2년인 거예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6년까지 할 거냐 27년까지 할 거냐인데 26년까지 해도 별문제가 없어요.

○**조승환 위원** 끝까지 잘하면 2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25년에 끝나면 좋고 그런데 2028년까지 늦어지면 그때 법안 논의해서 한 번 더 연장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이 정리……

○**전문위원 조문상** 지금 1+1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과거사정리위원회 입법례에 따르면

1년의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달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성곤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거 아니에요.

보고해서, 쉽게 말해서 정부의 허가를 득해서 1+1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자동 연장.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맞지요?

○이달희 위원 다른 것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연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하니까, 연장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하시지요. 그리고 국회에도 보고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거 국회에도 보고합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다른 과거사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연장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그러니까. 국회에도 보고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이건 좀 정리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이야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저는 보고나 이게 굳이 실효성 문제로 따지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부 측 하는 대로 1년, 1년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형성된 것은 조사가 완료가 안 되면 더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법안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 어질 텐데, 안 하게 되면.

○이달희 위원 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여서 합의된 수준에서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방금 정리한 대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니까 보고 같은 것 없이 그냥 자체 판단하에 1년……

○이달희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조승환 위원**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서.

○**전문위원 조문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전문위원 조문상** 진상규명 신고기한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조사기간 연장과 보고서 작성기간은 1+1, 6개월+6개월인데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원님들, 또 다음 죽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회 추천은 최소 4명~6명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봄서는 당연직 위원들을 포함하시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국회 추천하는 숫자가 적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연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거의 참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꼭 필요할 때 와서 그냥 손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는 9명이 전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명을 국회에서 한다 이런 조금 무리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부안대로 9명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제일 맞는 것 아닌가,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김성희 위원** 저는 조금 반대인 게 6명은 일단 정부에서 임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당 봉도 1명 또 있으니까 7명을 임명하고 야당 1명, 국회의장 1명인 구조이지 않습니까? 3명은 너무 박하다. 제가 6명을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3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야당의 목소리는 아예 담기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숫자인데 15명 중에 2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보한다면 위성곤 위원님 안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위쪽의 기간은 다양보를 했는데 그런 정도 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승환 위원** 김성희 위원님 저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달희 위원** 예.

○**박정현 위원** 더구나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추천 봉이 절반이니까요.

○**한병도 위원** 6명도 아니고 4명이면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4명 정도 절충안을 제안……

김성희 위원님이 오늘 이상한데요? 강경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들……

○**위성곤 위원**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김성희 위원께서 하시는 거니까 감안해 주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2명, 그 외 교섭단체 2명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윤건영** 어떻게요?

○**전문위원 조문상** 지금 개정안이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3명, 그 외 교섭단체 3명이거든요. 이거를 2명씩 하면 4명이 되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그렇지.

○김성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지요. 제가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는데 여당을 2명 주겠다고 하면……

○소위원장 윤건영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4명인데 아마 김성희 위원님 주장은 1명은 국회의장 그다음에 교섭단체가 각각 1명, 나머지 1명이 좀 고민스러운데 이걸 비교교섭단체로 할지 아니면 국회의장을 둘 줄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 대 2로 할 것 같으면 4명 주장할 이유가 없지요.

○김성희 위원 사실 이건 표결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내에서? 그러면 야당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당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봐야 두세 명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차관님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주4·3법에 국회의 추천을 네 분 하시도록 돼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통령 소속 관련 정당에서 둘, 그 외 교섭단체에서 둘 이렇게 제주4·3법이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요, 의장님 빼고 그렇게 가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절충안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요.

○김성희 위원 절충하시면서 여당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러니까 나머지 이태원참사, 가습기, 5·18 등등에서도 반반씩 이렇게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취지 자체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반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각각 1명 그다음에 비교교섭 1명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춘생 위원 좋은 절충안입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님의 당적도 있는 거고……

○김성희 위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춘생 위원 의장님은 당적 없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 봤자 야당 봇이 몇 명 안 돼요.

○김성희 위원 그래도 15명 중에 3명이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애초에 법안을 냈던 분들의 취지 자체가 9명 중 6명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좀 과다하다고 하니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처럼 그 위원회에 부합하는 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인사들을 추천하는 사례들이 많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봇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추천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회 추천 뜻이 없는 건데 국회 추천 뜻이 있으면 국회 추천자가 좀 더 입장을 선명하게 내고 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갈 텐데, 1·1·2 이건 어때요?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2명.

○**조승환 위원** 새로운 입법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법 개정안 취지와 이런 걸 감안하면……

○**위성곤 위원** 이게 여당에서 의결하는 데는 이 수를 넣어도 아무런 변동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거기서 보이스를 좀 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저는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안은 뭐예요?

○**조승환 위원** 비교섭단체.

○**소위원장 윤건영** 비교섭단체를 1명 해서요 의장 추천 1명, 교섭단체 각각 1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4명……

○**위성곤 위원** 교섭단체가 3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소위원장 윤건영** 갑자기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한병도 위원** 아니, 개연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리할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대로 놓고 판단을 해야지요.

○**위성곤 위원** 그래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기타 교섭단체로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면 방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간명하게 하면 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2명 하고 팔호 안에 비교섭 1명 이렇게 가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게 입법례나 이런 것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양부남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도 합의하지요.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숫자 가지고.

○**조승환 위원** 숫자 가지고서……

○**위성곤 위원** 의미도 없는 것, 뭐 방통위처럼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조승환 위원** 아니, 입법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지요. 이게 이렇게 입법례……

○**박정현 위원** 새롭게 또 만들어 가야지요. 22대니까 새롭게 또 길을 열어야지요.

○**위성곤 위원** 길을 여세요, 새 길을.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주4·3처럼 똑같이 가는 게……

○**위성곤 위원** 이것은 합의가 잘 안 되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로 넘길까요? 보류할까요?

○**위성곤 위원** 예, 보류하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 아까 합의하신 것 아니에요?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안에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조승환 위원** 4명으로 정해 놓고 보류하고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예, 4명으로 해 놓고……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일단 4명으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죽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는 다 끝났으니까요.

○위성곤 위원 정부 측에서 지금 신중 검토라고 하는 얘기는 고민된다 뭐 이런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될 텐데 뒤페이지에 있는 특별재심 청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진상조사 완료 후 추후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미 제주4·3법에도 정리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바로 즉시 도입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추후 도입한다고 하면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결판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조영진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재심은 과거사 중에 입법례가 제주4·3 사건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제주4·3은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 03년도에 된 이후 18년이 지난 2021년도에 특별재심이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심을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된 후에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특별재심을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시면 법무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입법화를 하고요.

대신에 직권재심 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주4·3 외에 다른 부마나 5·18이나 3·1 등에도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을 고려해서 우선 특별재심 도입을 먼저 하고 진상규명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직권재심 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종의 수정의견인데요. 두 개를 나눠서 특별재심은 입법화하고 직권재심 청구 권고는 추후 상황을 봐서 진상조사 완료 후에 검토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병도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또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은 반영 안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행안부는 신중 검토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라는 의견입니다.

○조승환 위원 이것은 안 하기로 했었던…… 맨 끝에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되었던 거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하지 말고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추천 뜻은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아니, 이것은 미반영으로 지난번에 끝난 건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거잖아요.

○조승환 위원 박 위원님, 저도 4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입법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박정현 위원 입법례는 새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사실 법률이라는 게 무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달희 위원 제일 뒤에 끝에 두 개 있는 것은 지난번에 검토 안 하기로, 미반영하기로……

○조승환 위원 그리고 진상보고서 국회 보고는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리하면 진상보고서 국회 보고는 이견 없는 거니까 이것은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특별재심 이것도 정리가 된 거고요.

묶어서 2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객관성 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신설 이 2건에 대한 의견.

○이달희 위원 이것은 반영 안 하기로……

○소위원장 윤건영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뭐가 남냐면 하나만 남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두 가지 남습니다, 1페이지 하단 2개.

○위성곤 위원 아니, 위원회 추천, 구성이 남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것 말고 지금 이야기 안 된 게 두 가지. 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균형 있는 역사관을 추가하는 부분과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은 4인으로는 합의가 된 거고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의 문제고 밑의 두 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시에 균형 있는 역사관을 넣자라는 건데 개정안의 취지는 위낙 지금 위원 구성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라도 하자, 균형 있는 역사관이라도 하자라는 거고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기가 원래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균형 있는 역사관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맡기시지요. 이 정도 얘기가 되고

또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제기도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안 넣어도, 없어도 법이 통과되고 또 개정안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균형 있는 역사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조문을.....

○**정춘생 위원** 안 그러니까 지금.....

○**이달희 위원** 그래도 그 하나하나를, 정치적 이념 중립 그것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테 이 균형 있는 역사관을 어떻게.....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지금 법 조항에는 보시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그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 있는 역사관 이것을 넣자라는 취지인데요.

○**이달희 위원** 앞에 정치적 중립성이 들어가면 뒤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하는 것은.....

○**위성곤 위원** 동의하시고 다만 명문화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에서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넣는 것은 어때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적 참사, 10·29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29 관련법에.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위성곤 위원** 되지요.

○**이달희 위원** 예, 그 정도로.....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균형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결린다고 하니 독립성과 객관성 중에 독립성은 빼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달희 위원** 예, 그렇게 가시지요.

○**위성곤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조문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소위원장 윤건영** 조문에 넣어도 되는 거지요, 10·29 특별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그것은 넣으시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이 정도의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떻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객관성’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하고 위성곤 위원님처럼 부대의견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라라

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안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위원 추천, 아까 4명을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가 딱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돋기 위해 생활지원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상 생활지원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전체적인 과거사법을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중에 후유장애인으로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분한테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가 있으셔서 당연히 생활이 안 되셨겠지요.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드리고 있는 생활보조금하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것은 어쨌든 자격이 되시면 자자체 단위에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 조항처럼 유족에까지 생활지원금을 드리게 되면 희생자들은 의료지원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많으신데 유족들은 그냥 생활지원금만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시고,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90인까지도 유족이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명확하고 지금 전체적인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 체제하고도 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장으로서 절충안을…… 혹시 다른 절충안 제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내 볼까요?

○**한병도 위원** 내 보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 두 가지 쟁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을 어떻게 하는가하고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부분인데……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유족분들이 굉장히 애태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저희 국회에서 모른 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족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이렇게 정리하는 절충안을 둑어서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소위원장 윤건영** 예.

○**조승환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유족 대표가 몇 명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유족 대표가 2명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자료 19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숫자 관련돼서는 이태원특조위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하고 있고 세월호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 둘에 야당 3명이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입법례는 충분히 있어서……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방금 절충안……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절충안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생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윤건영** 유족의 그런 요구가 있으니 관계 부처에서 유족들에 대한……

○**한병도 위원** 법안 내용에 담지는 않고?

○**소위원장 윤건영** 예, 법안에 담지는 않고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죽 보고해 주실 것을 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2 이렇게 가는 것으로……

○**조승환 위원** 정부에서 좋은 입법례나 아이디어 있어요? 4명은 이미 합의한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 측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유족 지원금 관련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 법률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조항을 이 정도로 타협해 보면 어때요? 유족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넣어서 타협해 볼 수는 없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이 의료지원금하고 생활지원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분이.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희생자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희생자의 경우에.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근거 정도를 만들어 내면 지방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족 지원 사안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도 관련되어진, 윤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선에서 절충을 하면 어떨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저희가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유족의 범위가 상당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계비속으로 할지 형제자매로 할지.

저희가 과거사 유례를 보면 아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최대 팔십 분까지도 유족이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많은 경우에. 아마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할지 계산이 돼야 되고요.

유족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 부분은.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지금까지 1884건이 지금 희생자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중에 희생자가 1600명이고 유족이 한 6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족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연히 유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유족 또한 그 피해의 당사자잖아요,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평생 입어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정도 고민은 저는 너무 소홀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행안부가 그것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근거 규정을 만들면 관련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유족의 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유족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정책 개발들을 해 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를 포함한 다른 과거사법에 지금 유족에 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신규로 유족에 관한 부분을 처음으로 신설하는 건데요. 유족의 범위를 저희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한 사오만 명 이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소위원회장님 말씀처럼 아직 희생자 보상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것도 덜 끝났는데 행안부가 다시 연구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건영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급하게……

○**박정현 위원** 위원회 구성도 관련해서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조승환 위원** 같이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조승환 위원님께서 같이 동의하자고 하시네요.

○**김성희 위원** 저희 다 양보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달희 위원** 우리 소위원회장님 의견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논의를 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다 동의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윤건영 위원님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면 위성곤 위원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도 말씀해……

○**이달희 위원** 다른 데도 아직 희생자 보상도 안 끝났는데……

○**양부남 위원** 유족,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장 윤건영** 안이 있으면 안을……

○**양부남 위원**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유족의 범위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4·3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지금 정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양부남 위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유족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부남 위원** 4·3법에서는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희생 당한 사람하고 직접 관련된 범위로 정하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직접 관련된.

그 범위를 정해서 우리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달희 위원** 그게 윤건영 위원장님 의견입니다.

○**양부남 위원** 예, 그래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다시……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유족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 무한대가 될 수가 있지요. 법적 개념에서 유족이라면 남겨진 가족이니까 무한정 되는데 이 법의 입법 취지로 봤을 때 희생자의 남겨진, 손·자·부 중에서 희생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됐던 범위로 한정하는 것도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해 보자……

○**양부남 위원** 예, 모아서 한번 토론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4·3도 관련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위성곤 위원** 예.

저는 제안했는데 위원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위성곤 위원님……

저는 위성곤 위원님 안이 좋은데.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유족 생활지원금이라고 ‘금’이라고 표현하거나 의료지원금, ‘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활·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으면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정부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족에 대한 범위도 확정하고 어떤 시책이 가능한지도 발굴해 보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를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차관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부가 지금 당장 부담을 안지는,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있으니 포괄적 규정은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혹시 잘못 드렸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소위원장 윤건영** 유족에 대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닙니다, 희생자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유족에 대해서 포괄적 규정.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그 유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괄적 규정으로 여기에만 둘 건지. 다

른 과거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지금 법 구조를 보면 3조 10호에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다가 ‘유족’만 집어넣어 버리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무를 부담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한테는 아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해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계 곤란하고 이렇게 같이 앤드 조항이 됐을 때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의료지원금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서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고 생계 곤란 사유로만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이런 희생자와 유족과의 형평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이것을 한번, 단순히 법 조항에 그냥 유족만 집어넣어서 잘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반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방안을 연구하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집어넣고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2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있는 현 임원들의 임기가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것은 당연히 경과 규정 두는 걸로 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러면 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소위원장 윤건영** 여순법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정리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간토 대학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으나 여러 가지 우려된 부분들이 있고 야당 위원님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는 법안소위에서 깊게 토론을 해 볼까 했는데 앞서 공청회에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성권 정춘생 조승환  
한병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황길현

### ○출석 진술인

박덕진(시민모임 독립 대표)  
성주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 소장)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  
최현선(명지대학교 교수)